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267-14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식물신품종 보호법령집

2013. 1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목 차

■ 식물신품종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1
1.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14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14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9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23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173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207

식물신품종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1.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품종보호 대상)</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p> <p>제4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제5조(대리권의 범위) 제6조(대리권의 증명) 제7조(복수당사자의 대표)</p> <p>제8조(기간의 연장 등) 제9조(절차의 보정) 제10조(절차의 무효)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제2조(정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p> <p>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p> <p>제2조(번역문의 첨부) 제3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제4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 제5조(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제6조(국적증명 등) 제7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제8조(기간의 연장신청) 제9조(기간의 지정) 제10조(기간지연 구제신청) 제11조(서류의 원용) 제12조(서류 등의 보정) 제13조(서류 등의 제출) 제14조(우편물의 배달지연)</p>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p>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p> <p>제1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p> <p>제1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p> <p>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p> <p>제16조(품종보호 요건)</p> <p>제17조(신규성)</p> <p>제18조(구별성)</p> <p>제19조(균일성)</p> <p>제20조(안정성)</p> <p>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p> <p>제22조(외국인의 권리능력)</p> <p>제23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p> <p>제24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p> <p>제25조(선출원)</p> <p>제26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p> <p>제2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p>		<p>제15조(우편물의 분실)</p> <p>제16조(우편업무의 중단)</p> <p>제17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p> <p>제18조(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p> <p>제19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p> <p>제20조(절차의 속행 통지)</p> <p>제21조(포기 또는 취하)</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품종보호 출원</p> <p>제22조(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p> <p>제23조(협회의 범위)</p> <p>제24조(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p> <p>제25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p> <p>제26조(협약의 결과의 신고)</p> <p>제27조(권리의 승계 신고)</p> <p>제28조(지분의 기재)</p>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5조(승계의 결정) 제6조(권리의 양도)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제17조(예정가격) 제18조(처분의 공고) 제19조(계약서의 작성) 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제23조(계약의 해지)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제25조(대장의 비치)	제29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제31조(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제32조(견적서) 제33조(실시승인신청서) 제34조(수의계약신청서) 제35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6조(계약서) 제37조(대장의 비치) 제38조(변동사항의 통지)
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제26조(등록보상금)	

식물신제품 보호법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p>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p> <p>제31조(우선권의 주장)</p> <p>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p> <p>제33조(출원의 보정)</p> <p>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p> <p>제35조(보정의 각하)</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심사</p> <p>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p> <p>제37조(출원공개)</p> <p>제38조(임시보호의 권리)</p> <p>제39조(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p> <p>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p> <p>제41조(자료의 제출 등)</p> <p>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p>	<p>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p> <p>제28조(보상금의 지분 지급)</p> <p>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p> <p>제30조(보상금 등의 반환)</p> <p>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p> <p>제32조(준용)</p> <p>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p> <p>제34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p> <p>제35조(심사관의 자격)</p>	<p>제39조(직무육성자의 의무)</p> <p>제40조(품종보호 출원서)</p> <p>제41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p> <p>제42조(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p> <p>제43조(보정의 각하결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심사 등</p> <p>제44조(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p> <p>제45조(출원공개)</p> <p>제46조(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p> <p>제47조(심사의 방법)</p> <p>제48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p> <p>제49조(거절결정 등)</p>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p>제43조(품종보호결정)</p> <p>제44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p> <p>제45조(「특허법」의 준용)</p> <p>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p> <p>제46조(품종보호료)</p> <p>제47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p> <p>제48조(품종보호료의 보전)</p> <p>제49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p> <p>제50조(품종보호료의 면제)</p> <p>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p> <p>제52조(품종보호 원부)</p> <p>제53조(품종보호 공보)</p> <p>제5절 품종보호권</p> <p>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p> <p>제55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p> <p>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p> <p>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p> <p>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p> <p>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p>	<p>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p>	<p>제50조(의견서의 제출)</p> <p>제51조(품종보호결정)</p> <p>제52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p> <p>제4절 품종보호권</p> <p>제53조(종자시료의 보관)</p> <p>제54조(품종보호권 등록증)</p>

식물신제품 보호법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제60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제61조(전용실시권) 제62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63조(통상실시권) 제64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65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 실시권) 제66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68조(재정청구서의 송달) 제69조(재정의 방식 등) 제70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제71조(대가의 공탁) 제72조(재정의 실효 등) 제73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제7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75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제76조(포기의 효력) 제77조(질권) 제78조(질권의 물상대위) 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제80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제37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제55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제56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제57조(답변서의 제출) 제58조(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제59조(재정의 취소신청) 제60조(답변서의 제출) 제61조(재정의 취소결정) 제62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제63조(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식물신제품 보호법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p>제81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p> <p>제82조(보호품종 유지 의무)</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p> <p>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p> <p>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p> <p>제85조(손해배상청구권)</p> <p>제86조(과실의 추정)</p> <p>제87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p> <p>제88조(보호품종의 표시)</p> <p>제89조(거짓표시의 금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심판</p> <p>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p> <p>제91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p> <p>제92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p> <p>제93조(심판청구방식)</p> <p>제94조(심판위원)</p> <p>제95조(심판위원의 지정 등)</p> <p>제96조(심판의 합의체)</p> <p>제97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p> <p>제98조(「특허법」의 준용)</p>	<p>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p>	<p>제64조(품종보호의 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심판 및 재심</p> <p>제65조(심판청구서)</p> <p>제66조(심판번호의 부여 등)</p> <p>제67조(답변서의 제출)</p> <p>제68조(증명자료의 첨부)</p>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재심 및 소송</p> <p>제99조(재심의 청구) 제100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0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제10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3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04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품종의 명칭</p> <p>제106조(품종명칭)</p>		<p>제69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 제71조(심판참가신청서) 제72조(의견서의 제출) 제73조(증거보전신청) 제74조(심판청구의 취하) 제75조(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76조(심리 재개 신청) 제77조(심판의 결정서) 제78조(심판 비용)</p> <p>제79조(재심 청구서)</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품종명칭</p>

식물신제품 보호법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제107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제108조(품종명칭의 선출원)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제114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제115조(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6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제80조(협의결과의 신고) 제81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제8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제84조(심사규정의 준용) 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 제86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87조(답변서의 제출) 제88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89조(거절결정 등)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제118조(종자위원회)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칙</p> 제41조(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제43조(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44조(수당) 제45조(간사)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제90조(공보)

식물신제품 보호법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p>제119조(분쟁의 조정)</p> <p>제120조(위원의 제척 등)</p> <p>제121조(자료 요청 등)</p> <p>제122조(출석의 요구)</p> <p>제123조(직권조정결정)</p> <p>제124조(조정 성립 등)</p> <p>제125조(수수료)</p> <p>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p> <p>제127조(사용문자)</p> <p>제128조(서류의 보관 등)</p> <p>제1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p> <p>제130조(「특허법」의 준용)</p>	<p>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p> <p>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p> <p>제48조(운영세칙)</p> <p>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p> <p>제50조(송달대상 서류)</p> <p>제51조(서류의 송달 등)</p> <p>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p>	<p>제91조(분쟁의 조정)</p> <p>제92조(사용문자)</p> <p>제93조(서류의 열람 등)</p> <p>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p>제131조(침해죄 등)</p> <p>제132조(위증죄)</p> <p>제133조(거짓표시의 죄)</p> <p>제134조(비밀누설죄 등)</p> <p>제135조(양벌규정)</p> <p>제136조(몰수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벌칙</p>	

식물신제품 보호법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p>제137조(과태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457호, 2012.6.1></p> <p>제1조(시행일)</p> <p>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p> <p>제3조(품종관리인 등록,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제3조의2(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제4조(품종보호 등의 출원, 등록,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제5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제6조(심판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제7조(품종명칭 등록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제8조(종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제9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p> <p>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p> <p>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701호, 2013.3.23></p> <p>제1조(시행일)</p> <p>제2조(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062호, 2013.8.13></p>	<p>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562호, 2013.5.31></p> <p>제1조(시행일)</p> <p>제2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제3조(심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p> <p>제4조(심판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p> <p>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호, 2013.10.18></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품종보호 대상)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식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p> <p>제4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② 품종보호관리인은 특별히 주어진 권한과 그 밖에 모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p> <p>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p> <p>제2조(번역문의 첨부) 국적증명서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서류에 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①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③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④ 재외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p> <p>제5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p>제6조(대리권의 증명)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제7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5조제4호의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p>		<p>제4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5조(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품종보호에 관한 산림청,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절차를 밟는 데에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국적증명 등) 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인 경우는 제외한다.</p> <p>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 중 어느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p> <p>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제8조(기간의 연장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91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제111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p>		<p>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p> <p>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p> <p>제7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8조(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심판위원회위원장,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심판장이나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9조(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p>제10조(절차의 무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p>		<p>이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9조(기간의 지정) 법 제9조에 따른 보정기간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에 따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물과학원장·심판위원회위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분석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분석 등에 걸리는 기간으로 한다.</p> <p>제10조(기간지연 구제신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및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에 따른 지연된 절차의 추</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p>		<p>후보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지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11조(서류의 원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로서 제3조제2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원회위원장에게 제3조제2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증명서류와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를 원용(援用)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적고 그 사본을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제12조(서류 등의 보정) 법 제9조, 제33조, 제93조제2항 단서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13조(서류 등의 제출)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처리를 위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출서와 함께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4조(우편물의 배달지연) 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 기간이 정해진 것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하여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해당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p> <p>제15조(우편물의 분실)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p> <p>제16조(우편업무의 중단) 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해진 것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류지에서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간 만료일 전 10일 사이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그 서</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p>		<p>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해당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이 우편업무가 회복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p> <p>제17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에 따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 2. 제54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 발급신청서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처리조치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p> <p>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1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p> <p>제1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장 및 심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③ 서류의 통지등은 이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p>		<p>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제출받는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p> <p>제18조(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는 산림청·국립종자원·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p> <p>제19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심판위원회위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p> <p>제20조(절차의 속행 통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도 달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 중 "특허청 소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재지"로,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은 "제91조"로 본다. <개정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p> <p>제16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p>		<p>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1조(포기 또는 취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품종보호 출원</p>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p>제17조(신규성)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 		<p>제22조(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출원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p> <p>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p> <p>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p> <p>제18조(구별성)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6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p>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품종보호를</p>		<p>제23조(협회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를 말한다.</p>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받기 위하여 출원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한 품종은 그 출원일이나 신청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품종은 제외한다.</p> <p>제19조(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3호의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제20조(안정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p> <p>제22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p> <p>1.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p> <p>2.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p> <p>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등"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p> <p>제23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속인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때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그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p>		<p>제24조(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의 품종보호 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25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품종보호의 출원 시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품종보호에 대한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보 게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5조(선출원) ① 같은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p> <p>②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보호 출원인"이라 한다)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p> <p>③ 품종보호 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취하되면 그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④ 육성자가 아닌 자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p>		<p>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각심결을 확정하거나 또는 품종보호의 무효심결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6조(협의 결과의 신고)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보호 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 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정하여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p> <p>제26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p> <p>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p> <p>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p> <p>제2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p> <p>①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p> <p>②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 출원인이 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p>		<p>제27조(권리의 승계 신고)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이나 품종보호 권리의 상속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식물신제품 보호법 <small>[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small>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small>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small>[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small>
<p>④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⑥ 제2항과 제5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p> <p>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①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국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p>	<p>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제품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승계의 결정)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제품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p>	<p>제28조(지분의 기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9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제품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 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직무육성품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의 업무 범위를 기술할 것 2. 직무육성자의 임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③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양도하여야 한다.</p> <p>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p> <p>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제품이 직무육성제품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p> <p>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제품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p>	<p>3. 직무육성제품의 실용성 : 해당 직무육성제품의 실용가치와 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기술할 것</p> <p>4. 직무육성제품의 특성 : 해당 직무육성제품의 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 등을 기술할 것</p> <p>5. 서명날인 : 직무육성자가 서명날인할 것</p> <p>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직무육성제품 설명서 1부</p> <p>2.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p> <p>3. 품종보호 출원서 부분 1부</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3. 승계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p>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 자가 없는 경우나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다.</p> <p>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p> <p>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 정부기관</p>	<p>제31조(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국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p> <p>제32조(견적서) 영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p>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p> <p>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데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할 때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끝난 후 그 실시료 	<p>제2호에 따른 견적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p> <p>제33조(실시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p>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를 올려 재계약할 때</p> <p>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p> <p>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p> <p>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p>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7조(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p> <p>제18조(처분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p>	<p>제34조(수의계약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p> <p>제35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총 추정액 2. 유사한 국유품종보호권의 매매가격(제1호에 따라 양도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p> <p>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실시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의</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해당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p> <p>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p> <p>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p> <p>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p>	<p>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p> <p>③ 제2항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p> <p>제36조(계약서) 영 제19조에 따른 계약서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그 실시권의 범위를 함께 적어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p> <p>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과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계약의 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 단서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p>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26조(등록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p> <p>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p>	<p>제37조(대장의 비치) 영 제25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 대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을 준용한다.</p> <p>제38조(변동사항의 통지) 영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및 육성기관의 장은 직무육성자가 전직·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산림청장·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9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p>	<p>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p>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중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p> <p>제28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p> <p>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p> <p>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p> <p>제30조(보상금 등의 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2조(준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p> <p>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p> <p>④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p>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4.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제출 연월일 7. 제31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 2. 품종의 사진 3. 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 	<p>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출원을 받은"을 "출원을 한"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로 본다.</p> <p>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2.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 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 계통도 3.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p>제40조(품종보호 출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의 사진 2.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4.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4. 품종보호의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p> <p>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를 적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우선권의 주장) ①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할 때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명(國名)과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p>		<p>제41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3년까지 해당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의 거절결정(拒絶決定)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주장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출원품종 심사일 전이라도 그 품종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30조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제9조제2호의 사유로 보정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 출원일로 본다.</p> <p>제33조(출원의 보정)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p>		<p>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중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42조(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산림청장·국립중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 출원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일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번호 통지서를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p> <p>1. 제42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p> <p>2. 제43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전</p> <p>3.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p>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p> <p>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제34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p> <p>2.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p> <p>3. 일반승계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p> <p>4. 품종보호 출원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p> <p>5. 법 제109조제5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제35조(보정의 각하) ① 출원 후에 한 보정이 품종보호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고, 지체 없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심사</p>	<p>제35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②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p>	<p>제43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 연월일 2. 출원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 및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심사 등</p>
<p>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제37조(출원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제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38조(임시보호의 권리)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p>		<p>제44조(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은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하여 발행한 날로 한다.</p> <p>제45조(출원공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p>제46조(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출원공개일부터 업(業)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p> <p>② 출원공개 후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p>③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④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9조(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p> <p>① 법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중지의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① 심사관은 출원품종</p>		<p>제47조(심사의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41조(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배심사를 할 경우에는 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p> <p>제48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위탁받은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개요 또는 시험개요 2. 조사기간 또는 시험기간 3. 조사비용 또는 시험비용 <p>②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p> <p>③ 조사자는 조사나 시험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 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p> <p>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p>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43조(품종보호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49조(거절결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 4. 거절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거절결정 연월일 <p>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제50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51조(품종보호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44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p> <p>제45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 품종보호결정 연월일 <p>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의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출원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3.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4. 출원품종의 주요 형태적 특성 5.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6.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p>제46조(품종보호료)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p> <p>④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47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때에는</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품종보호권자의 품종보호권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품종보호료의 해당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제48조(품종보호료의 보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료의 보전(補填)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보전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품종보호료를 제46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 보전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2. 품종보호료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p> <p>제49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p> <p>③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경우 그 품종보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보호권은</p>		<p>제52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補填)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품종보호권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보호품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p> <p>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자가 보호품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2.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 <p>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 또는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그 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품종 또는 사업의 목적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p>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50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야 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p> <p>제52조(품종보호 원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종보호권의 설정, 이전,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53조(품종보호 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매월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품종보호권</p> <p>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① 품종보호권은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2.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 경과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3. 제48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한 때 4.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50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품종보호권</p> <p>제53조(종자시료의 보관) 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종자시료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종자의 보관·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관·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종자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협의 적기(適期)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4조(품종보호권 등록증)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정정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권 등록증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보호 등록번호 3. 설정등록 연월일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55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p> <p>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①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에서 수확한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p>		<p>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품종(기본적으로 다른 품종에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만 해당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보호품종과 제18조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3.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p>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원품종(原品種)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育種方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p> <p>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p>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제품의 실시</p> <p>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제품의 실시</p> <p>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제품의 실시</p> <p>②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품종보호권·권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제품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p>1.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제품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제품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p> <p>2.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제품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p> <p>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p> <p>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제60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① 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수 있다.</p> <p>②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p>③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p> <p>제61조(전용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p> <p>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 3. 그 밖의 일반승계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④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p> <p>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62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p>②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63조(통상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p>		<p>제55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중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 실시권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 품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③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p> <p>④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 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p> <p>⑤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 권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 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 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 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p> <p>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 3항을 준용한다.</p> <p>제64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 출 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 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 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 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 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p>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p>제65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품종보호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품종에 대한 둘 이상의 품종보호 중 하나가 무효로 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2. 품종보호를 무효로 하고 같은 품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품종보호를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3. 제1호나 제2호의 경우에 그 무효로 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p>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66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해당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需給)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 	<p>제37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보호품종의 실시에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3. 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4. 보호품종 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p>제56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서 부분 1부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적으로 보호제품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제품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p> <p>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호제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을 할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이라는 취지를 그 대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68조(개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서의 부분(副本)</p>		<p>제5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68조에 따라 재정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69조(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제70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p> <p>제71조(대가의 공탁)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p>		<p>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답변서 부분 1부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58조(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제72조(재정의 실효 등) ①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을 말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재정은 효력을 상실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 설정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때 최초 지급분 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 		<p>제59조(재정의 취소신청)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부분 1부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60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8조에 따라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답변서 부분 1부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한 경우</p> <p>③ 제2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67조제6항, 제68조,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p> <p>제73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p> <p>제7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품종보호</p>		<p>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p> <p>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제61조(재정의 취소결정)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및 품종보호권 등록 연월일 2. 보호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정내용 및 재정 연월일 6. 재정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7. 재정취소 연월일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② 제49조제5항,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및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p> <p>제75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①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p> <p>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p> <p>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p> <p>제76조(포기의 효력)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p> <p>제77조(질권)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없다.</p> <p>제78조(질권의 몰상대위)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p> <p>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로 본다.</p> <p>제80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없으면 품종보</p>		<p>제62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취소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품종보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보호권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권 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5. 품종보호권 취소 연월일 <p>제63조(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법 제80조에</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호권은 소멸한다.</p> <p>제81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하여금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82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① 품종보호권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당시의 그 보호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시험·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p> <p>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p>		<p>따라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p>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p> <p>제86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p> <p>제87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게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88조(보호품종의 표시)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p>		<p>제64조(품종보호의 표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p> <p>제89조(거짓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 표찰(標札),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심판</p> <p>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p> <p>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常任)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p>	<p>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보호품종의 종자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심판 및 재심</p> <p>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p> <p>②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③ 간사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보호품종의 종자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심판 및 재심</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1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79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92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 ①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1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4. 품종보호된 후 그 품종보호권자가 제22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p> <p>③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p>		<p>제65조(심판청구서)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66조(심판번호의 부여 등) ①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65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보호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권자·전용 실시권자, 그 밖에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93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일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품종보호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4조(심판위원)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p>	<p>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p> <p>③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5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p> <p>③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판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특허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p>② 품종보호심판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p>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4.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5.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6.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p> <p>④ 당사자는 심판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p> <p>⑤ 심판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p> <p>제9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p> <p>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97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5조, 제42조제2항 및 제43조를 준용한다.</p> <p>제98조(「특허법」의 준용) ① 제91조와 제92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7조, 제149조, 제151조,</p>		<p>제6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제1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3조, 제154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1조제1항·제3항,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제176조 및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2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p> <p>③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3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25조"로 본다.</p> <p>④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1조"로, 같은 조 제7항 중 "변리사"는 "자"로 본다.</p> <p>⑤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 중 "특허 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p> <p>⑥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91조"로 본다.</p>		<p>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답변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68조(증명자료의 첨부)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명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69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1조에 따라 심판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제71조(심판참가신청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심판 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72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 제157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서 부분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73조(증거보전신청)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중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4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75조(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再開)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6조(심리 재개 신청)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재심 및 소송</p> <p>제99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77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p>제78조(심판 비용)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9조(재심 청구서)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청구서</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p> <p>제100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이하 "사해심결"(許害審決)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p> <p>제10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 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p>제10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p>		<p>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p>제103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p> <p>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p> <p>⑥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⑦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p> <p>제104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①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③ 제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p> <p>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② 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 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특허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103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품종의 명칭</p> <p>제106조(품종명칭)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 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p> <p>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품종명칭</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제107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수확량·생산시기·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것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p> <p>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p> <p>제108조(품종명칭의 선출원) ①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은 "품종명칭"으로, "품종보호"는 "품종명칭 등록"으로 본다.</p> <p>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①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p>		<p>제80조(협의결과의 신고) 법 제10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성립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81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일을 적은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통지서를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법 제109조제5항</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p> <p>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④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06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08조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p>⑤ 심사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p>⑥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p>		<p>또는 제11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①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연월일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4.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담당 심사관 6.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p>②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공고일은 제1항에 따른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p> <p>제84조(심사규정의 준용)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p>		<p>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p> <p>제86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법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분 1부 2.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분을 품종명칭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이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p>		<p>제8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답변서 부분 1부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88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 연월일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 제10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경우로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는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p> <p>제114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해</p>		<p>5. 이의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p> <p>6. 이의결정 연월일</p> <p>제89조(거절결정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이유 2.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출원 공고 3. 법 제1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 <p>② 심사관은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 또는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 연월일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여 그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p> <p>②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도 그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115조(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6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① 누구든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품종(제54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은 제외한다)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p> <p>② 누구든지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수 없다.</p> <p>③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또는 그 품종의 승계인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p> <p>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된 경우 2.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118조(종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p>	<p>제41조(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종자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p>	<p>제90조(공보) 법 제37조·제42조·제43조·제53조·제54조 및 제109조에 따른 공보는 산림청장·국립</p>

식물신제품 보호법 <small>[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small>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small>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small>[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small>
<p>부에 농림중자위원회 또는 수산중자위원회(이하 "중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p> <p>1.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조언</p> <p>2.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제정의 심의</p> <p>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p> <p>② 중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90조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하 "중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p> <p>③ 중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p> <p>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중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p> <p>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중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p> <p>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4.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p>	<p>(이하 "중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p> <p>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p> <p>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제42조(중자위원장의 직무) ① 중자위원장은 중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중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자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자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43조(중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중자위원장은 중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중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44조(수당) 중자위원회에 출석한 중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5조(간사) ① 중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② 간사는 중자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중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p> <p>5.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p> <p>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p> <p>④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종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9조(분쟁의 조정) 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⑤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p> <p>② 종자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자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조정부는 종자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p>	<p>제91조(분쟁의 조정)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 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p> <p>2. 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예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p> <p>② 종자위원회는 법 제1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그 연장사유와 연장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p> <p>③ 법 제119조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재배시험 비용: 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p> <p>2. 유전자 검사비용: 검사시약 비용 및 인건비</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⑥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1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종자위원 나. 종자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p>②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p>	<p>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p> <p>③ 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p> <p>제121조(자료 요청 등)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본다.</p> <p>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침해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③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이에 참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p> <p>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종자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24조(조정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5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4. 제52조에 따른 등록(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6.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7. 제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8.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제127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p> <p>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p>		<p>제92조(사용문자) 법 제127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音譯)하여 함께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명 2. 품종명칭 3. 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전문용어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p>제93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를</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p> <p>1. 제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p> <p>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p> <p>제1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p> <p>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욕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법 제129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p> <p>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p> <p>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p> <p>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p>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욕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8.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예의 등록 1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1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p>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p> <p>1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p> <p>1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p> <p>16.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p> <p>17.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p> <p>1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p> <p>19.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p> <p>20.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p> <p>2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p> <p>2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p> <p>23. 법 제68조에 따른 재정청구서 부분(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p> <p>2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p> <p>25.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p> <p>2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p> <p>27.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p> <p>28.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p> <p>29.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p> <p>30.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p> <p>31.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p> <p>3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p> <p>33.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p> <p>34.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p> <p>35.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p> <p>36.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p> <p>37.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p> <p>38.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39.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예의 등록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9.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1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송달 및 공보 게재</p> <p>1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p> <p>1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예의 등록</p> <p>17.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p> <p>18.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p> <p>19.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p> <p>20.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p> <p>21. 법 제68조에 따른 부분(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p> <p>2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p> <p>2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p> <p>2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p> <p>25.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p> <p>2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p> <p>27.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제130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p>	<p>28.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p> <p>29.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p> <p>30.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p> <p>31.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p> <p>32.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p> <p>33.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p> <p>34.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p> <p>35.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p> <p>36.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37.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p> <p>④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p> <p>제50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 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및 제222조를 준용한다.</p>	<p>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p> <p>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적은 수령증을 받아 갖추어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③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④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p> <p>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한다.</p> <p>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p>제131조(침해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 	<p>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p> <p>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p> <p>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⑩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p> <p>⑪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p> <p>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벌칙</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p> <p>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132조(위증죄) ①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p>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34조(비밀누설죄 등)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직원(제129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p> <p>제1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1조제1항 또는 제1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6조(몰수 등) ① 법원은 제1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내줄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p> <p>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價額)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 	<p>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을 한 사람</p> <p>4.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p> <p>5.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p> <p>부칙 <제11457호, 2012.6.1></p>	<p>부칙 <제24562호, 2013.5.31></p>	<p>부칙 <제46호, 2013.10.1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자산업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3조(품종관리인 등록,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신</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자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품종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한다.</p> <p>제3조(심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변경과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변경과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23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신고한 자는 제27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의2(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8.13]</p> <p>제4조(품종보호 등의 출원, 등록,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는 제30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p>	<p>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각각 제35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심판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p> <p>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식물신제품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및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은 제52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자산업법」 제 68조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한 자는 제67조에 따라 재정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자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제 9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판위원회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자산업법」 제 9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품종보호심판위원은 제90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심판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심판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자산업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한 자는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자산업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자는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7조(품종명칭 등록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p> <p>[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p>
<p>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자는 제109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의2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8조(종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종자위원회는 제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자위원회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은 제11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9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61조 또는 제162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경우에는 제126조에 따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것으로 본다.</p> <p>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p>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해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p>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른다.</p> <p>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1701호, 2013.3.2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는 각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본다.</p> <p>부칙 <제12062호, 2013.8.13></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1호	12.5	25	50
나. 법 제81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2호	12.5	25	50
다.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3호	12.5	25	50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4호	12.5	25	50
마.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5호	5	10	20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위 임 장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임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위임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위임할 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작성 방법

- 문자는 검색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하며, 타자 또는 컴퓨터로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서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남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위임인·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하면 해당란을 추가하여 적어야 합니다.
- “사건의 표시”란에는 해당 절차에 관한 사건표시를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 출원번호: 2013-○○○호. 출원일: 2013. ○○. ○○.
- “품종의 명칭”란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의 “품종의 명칭”란에 적힌 것과 같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위임인의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외국인은 생년월일 대신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법인의 공식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가나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 위임인의 “주소”란에는 위임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적고, 반드시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하고, 뜻을 써서는 안 됩니다)한 위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하며, 괄호 안에 위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원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출원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심판청구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과 같이 사건과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 “위임할 사항”란에는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원칙적으로 삭제·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위임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대 리 인 해 임 신 고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 건 의 표 시	출원번호	출원일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해 임 된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해임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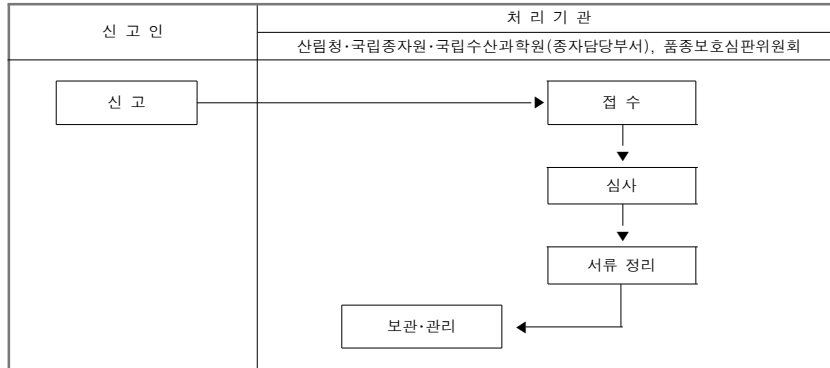
(뒤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하고, 타자 또는 컴퓨터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2. 서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남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신고인·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하면 해당란을 추가하여 적어야 합니다.
3. 신고인의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 외국인은 생년월일 대신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4.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의 "성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법인의 공식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가나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5. 신고인의 "주소"란에는 신고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적고, 반드시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6.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출원절차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심판청구절차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과 같이 사건과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7.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하고, 뜻을 써서는 안 됩니다)한 신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하며, 괄호 안에 신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8. "대리인"란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사건의 표시"란에는 해당 절차에 관한 사건표시를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 출원번호: 2013-○○○호, 출원일: 2013. ○○. ○○.
10. "품종의 명칭"란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의 "품종의 명칭"란에 적힌 것과 같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동시에 둘 이상의 절차를 밟을 때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는 그 증명내용이 같은 경우 한 건에만 첨부하고, 다음 예와 같이 원용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고 부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예] 위임장('13. ○○. ○○. 성명변경 신고서에 첨부된 것 원용)
12.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측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고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대표자 [] 선정
[] 해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 건 의 표 시	출원번호	출원일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신고 내용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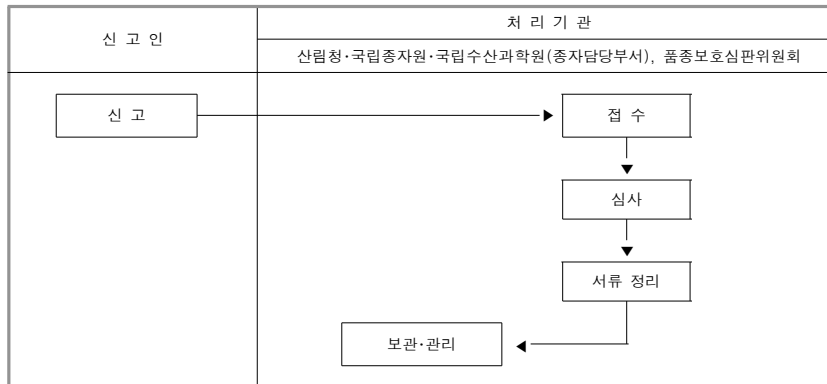
-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선정, []해임)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 "신고 내용"란에는 신고 종류에 따라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 대표자 선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선정한 대표자"라 적고, 그 뒤에 선정한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예]

신고 내용	선정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나. 대표자 해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대표자"라고 적고, 그 뒤에 해임된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예]

신고 내용	해임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 성명·명칭 [] 변경 신고서
 [] 주소 [] 정정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신고 내용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대리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장
 품 종 보 호 심 판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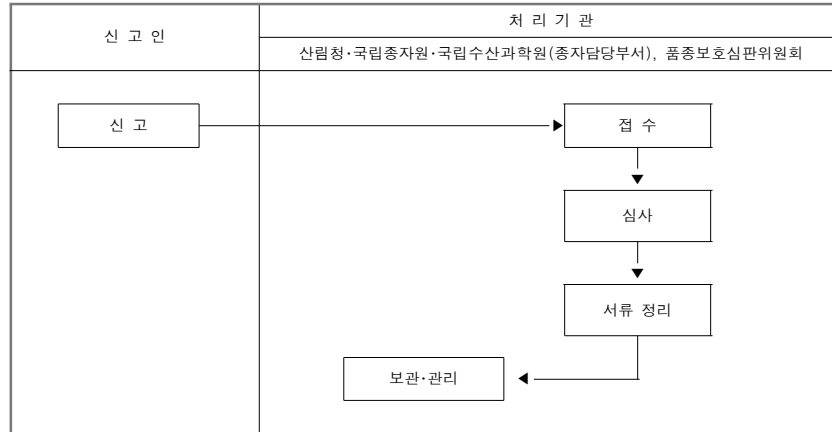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 성명·명칭, [] 주소), ([] 변경, [] 정정)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 “신고 내용”란에는 신고 종류에 따라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가. 명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명칭(법인명)과 변경 후 명칭(법인명)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변경 전·후의 관계가 나타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나. 주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주소와 변경 후 주소(현주소)를 각각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표 초본(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 성명·명칭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잘못 기재된 사항과 정정하는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정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법정
[] 지정
기간의 연장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담당 심사관(심판장)		작물의 명칭
제출할 서류		품종의 명칭
연장 횟수		제출 마감일
연장 이유		
연장 희망기간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물연구원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장
심사관

귀하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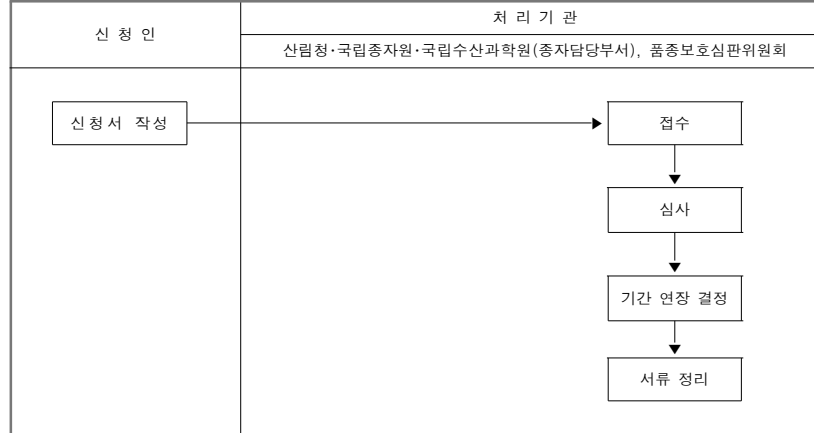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서식 제목에서 신청 종류를 나타내는 ([] 법정, [] 지정)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연장을 원하는 기간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할 서류"란에는 의견서, 보정서 등 제출할 서류명을 적어야 합니다.
3. "연장 이유" 및 "연장 희망기간"란에는 연장하여야 할 이유 및 연장하려는 기간(희망기간 마지막 날의 연월일)을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기간 지연 구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제출할 서류	제출 마감일	
기간 지연 사유		
기간 지연 사유가 없어진 날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지연 구제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간 지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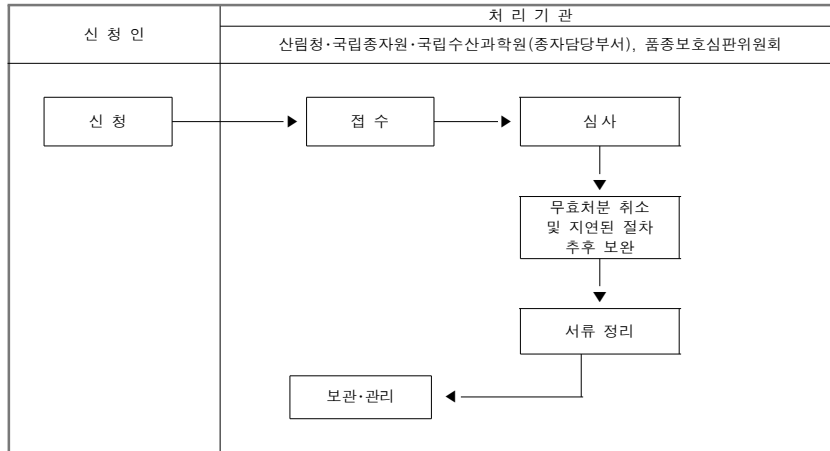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기간 지연 사유"란 및 "기간 지연 사유가 없어진 날"란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지연 사유 및 그 사유가 없어진 날짜(연월일)를 각각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 정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심판번호	심판 청구일

담당 심사관 (담당 심판장)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제출 원인	[] 자진 [] 보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짜 (. . .) 제출 마감일 (. . .)
보정 내용 및 이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전자: 3천원 서면: 1만3천원
------	--	-----------------------------

210mm×23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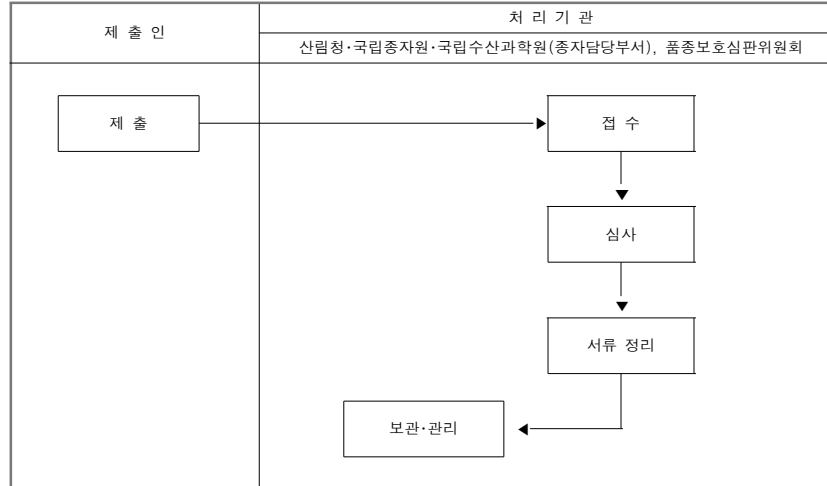
(뒤 쪽)

작 성 방 법

1. “제출인”란 및 “품종의 명칭”란은 품종보호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적어야 합니다. 다만, 출원 후에 출원인 및 품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정정된 주소·성명(따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및 품종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2. “제출 원인”란에는 해당 사항([] 자진, [] 보정명령) 중 해당란에 표시(√)하고, 보정통지서에 따른 보정과 같이 통지에 의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짜 및 제출 마감일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보정 내용 및 이유”란에는 보정 내용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보정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보정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 서류 [] 물건 제출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 건 의 표 시	출원번호	출원일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담당 심사관(담당 심판장)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제출 통지일 제출 마감일

제출할 서류 및 물건의 목록

반환 희망 여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인(대리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장 귀하
심 판 장
심 사 관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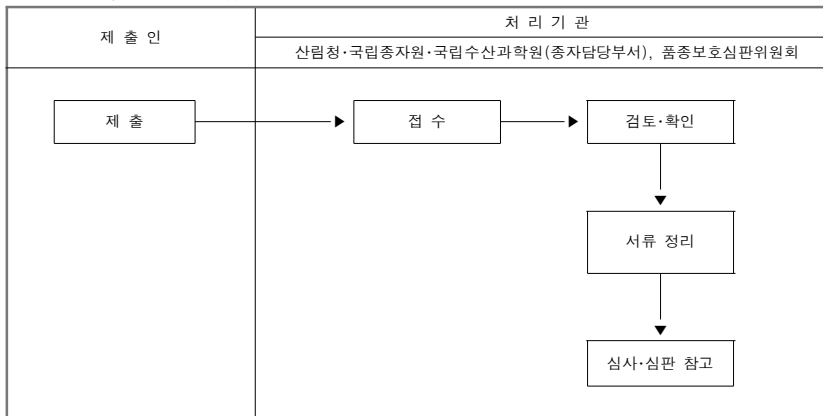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 서류, [] 물건)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제출 통지일”란 및 “제출 마감일”란에는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물연구원장·심판장 및 심사관으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은 날 및 제출 마감일(지정기간 마지막 날의 연월일)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제출할 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와 그 밖의 물건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반환 희망 여부”란에는 제출한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반환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품종보호 출원 포기서
 심판청구 취하서
 우선권 주장 취하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 건 의 표 시	출원번호	출원일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작물의 명칭 _____
 품종의 명칭 _____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이유 _____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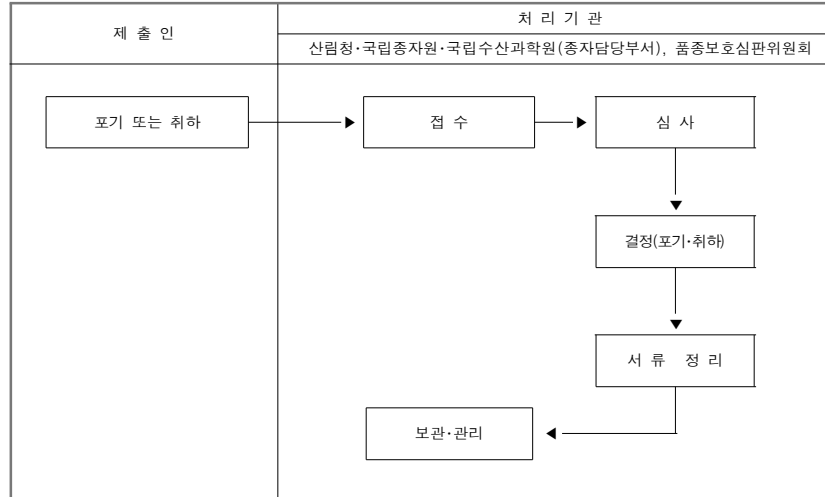
(뒤쪽)

작 성 방 법

1.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품종보호 출원, 심판청구, 우선권 주장) 및 (포기서, 취하서)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포기서 또는 취하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 리 질 차

이 포기서 또는 취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신규성 증명서류 제출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 건 의 표 시	출원번호	출원일

작물의 명칭 _____

품종의 명칭 _____

증명서류의 내용 _____

「식품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물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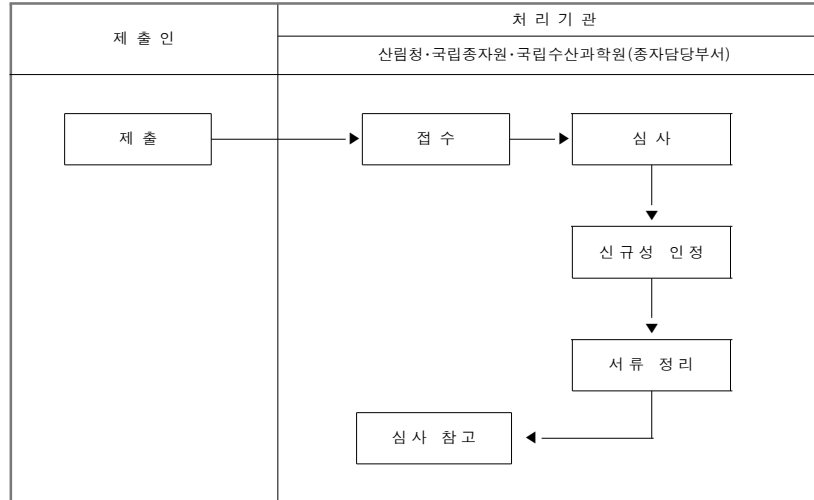
(뒤쪽)

작 성 방 법

1. "증명서류의 내용"란에는 신규성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식품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정당한 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무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무권리자 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	무권리자	작물명	
		품종명	
	정당한 권리자	작물명	
		품종명	
이의신청 내용	권리 도용 사실		
	증명방법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정당한 권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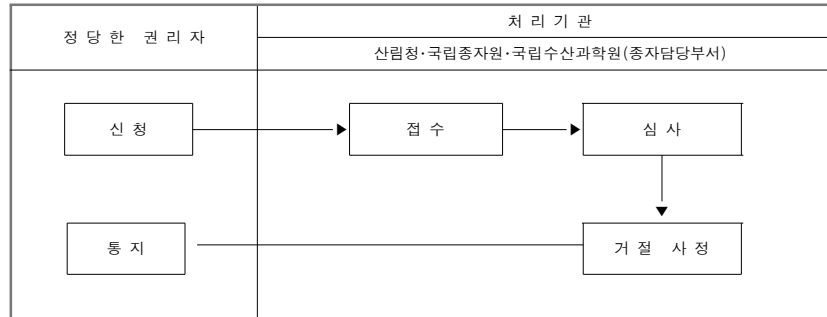
(뒤쪽)

작 성 방 법

1. “무권리자 출원의 표시”란의 “출원번호”란에는 “품종보호 출원 2013-○○○호”와 같이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출원일”란에는 출원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어야 합니다.
2.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란의 “무권리자”란에는 무권리자가 출원서의 “품종의 명칭”란에 적은 것과 같게 적어야 하고, “정당한 권리자”란에는 육성자가 육성한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을 1개만 적어야 합니다.
3. “권리도용 사실”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에 따라 무권리자가 출원한 품종이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을 도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증명방법”란에는 권리 도용 사실란에 적힌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신고서”를 “이의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 품종보호
[] 품종명칭

협의 결과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권리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권리자 선임협의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경합된 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권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권리자 선임 협의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협의 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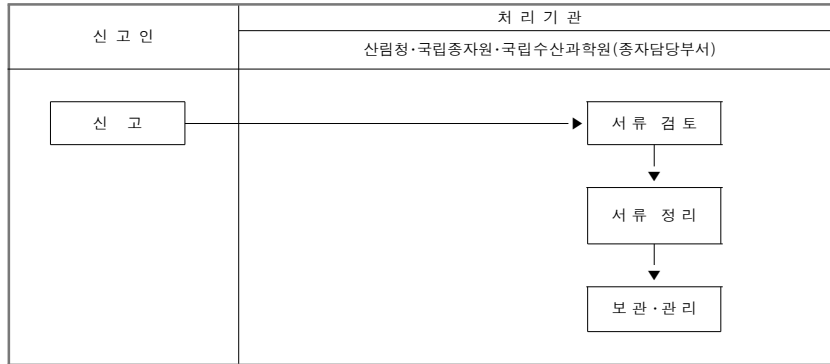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 품종보호, [] 품종명칭)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권리자 선임협의 당사자”란에는 경합된 출원의 출원인을 적어야 하며,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권리자란에 적은 사람 외의 모든 당사자를 적어야 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에는 권리자로 선임협의된 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고, “품종의 명칭”란에도 권리자로 선임협의된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적어야 합니다.
4. “경합된 출원의 표시”란에는 권리자로 선임협의된 출원을 제외한 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직무육성품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직무육성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현재	소속	직급	
	육성 당시	소속	직급	
육성품종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공동 육성 여부				
[] 공동		[] 단독		지분
공동 육성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 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육성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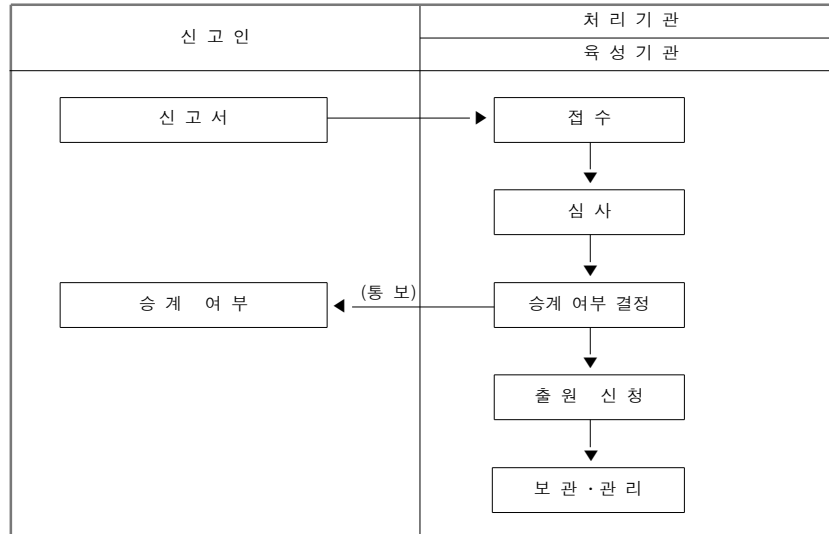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신고인(직무육성자)의 소속과 직급은 “현재”와 “육성 당시”를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2. “공동 육성 여부”란에는 [] 공동, [] 단독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3. “지분”란에는 공동 육성자가 공동으로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는 경우 상호간의 지분이 약정되어 있으면 “△/□”와 같이 지분 내용을 분수로 적어야 합니다.
4.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가. 소속기관의 업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 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직무육성 품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의 업무 범위
 - 나. 직무육성자의 임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 및 업무
 - 다. 직무육성품종의 실용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실용가치와 농업에 대한 기여도
 - 라. 직무육성품종의 특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 등
 - 마. 서명날인: 직무육성자의 서명날인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직무육성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현재	소속	직급
	육성 당시	소속	직급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품종보호 출원 사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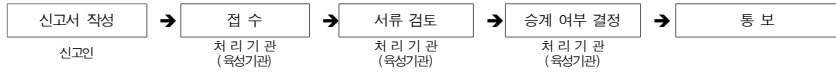
육성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품종보호 출원서 부분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품종보호 출원 사유”란에는 직무육성자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한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견 적 서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국유품종 보호권의 표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국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실시권의 범위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유상·무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상 <input type="checkbox"/> 무상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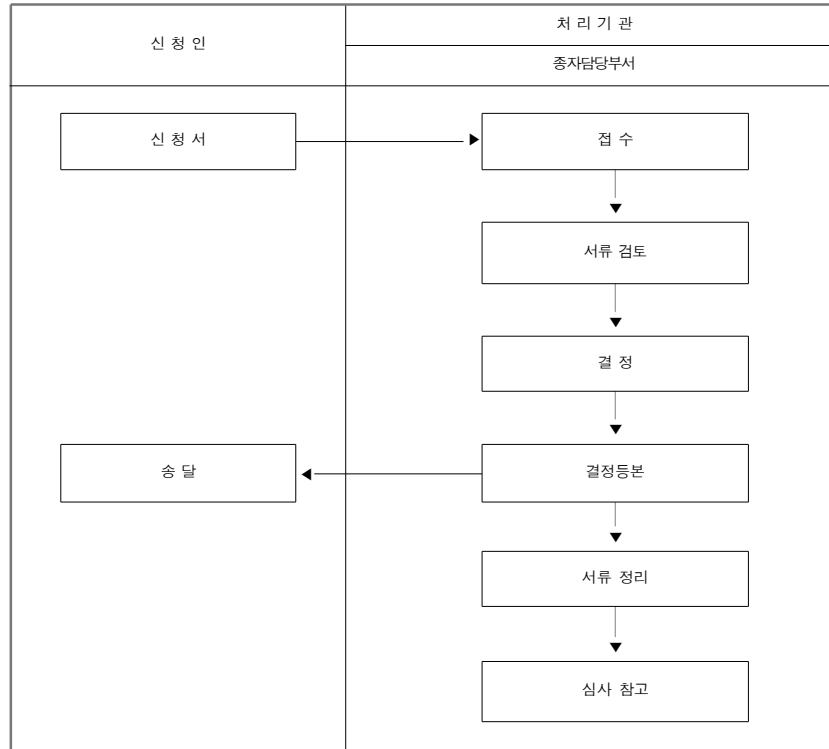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의계약신청서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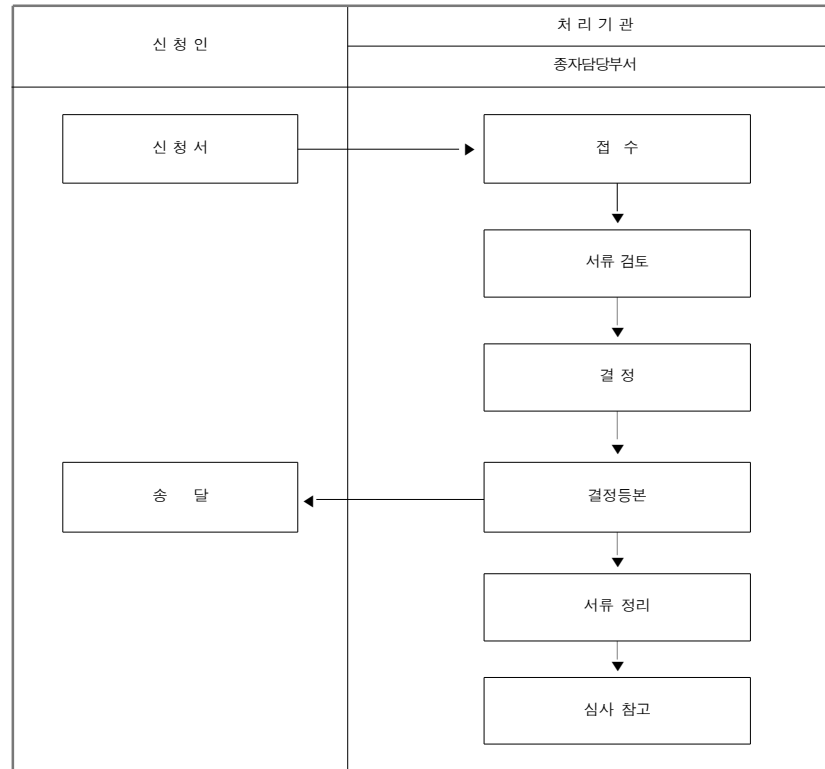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국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영문명)	
처분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양도 <input type="checkbox"/> 전용실시권 설정 <input type="checkbox"/>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수의계약 사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품종보호 출원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출원인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한글) (영문)	전화번호
	지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육성자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한글) (영문)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한글)
(영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일	출원번호
	증명서류	[] 첨부	[] 미첨부

품종의 특성 설명 (별지 사용)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별지 사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 출원을 합니다.

출원인(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물확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품종의 사진 2. 종자시료(종자시료가 목료,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확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4.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출원인의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을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만8천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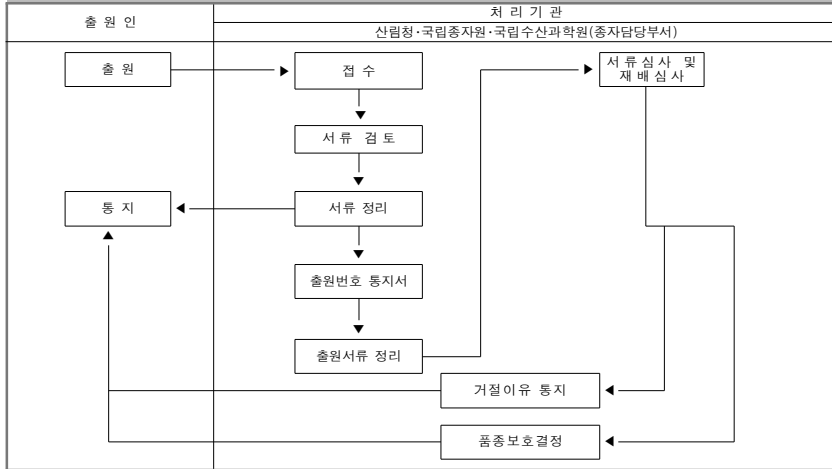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 방법

1. 서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난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출원인·대리인 및 육성자가 2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추가하여 적어야 합니다.
2. "출원인"란 및 "육성자"란은 출원인과 육성자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를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하고, 영문은 한글의 영문 표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외국어의 경우 원어 그대로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육성자가 출원자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과 같음"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란에는 출원서 제출 시 납부하는 품종보호 출원료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영수증(서류 첨부용)은 출원서 표지 뒤쪽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같은 출원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한 부가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품종보호 출원서(1), 품종보호 출원서(2)
5. 위임장(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은 정당한 관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란은 외국인의 최초 출원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만 적어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우선권 주장을 하려는 자는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일, 출원번호를 적어야 하며, "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란에 표시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출원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8. 2인 이상의 정당한 관리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으면 "지분"란에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학명: *Alim cepa* L., 일반명: 양파
9. "품종의 명칭"란에는 육성자가 육성한 품종의 명칭을 1개만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도 외국어를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 한글 품종명: 통일(Tongil), 외국품종명: Yellow king(옐로우 킹)
11. "품종의 특성 설명"란 및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품종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유전자변형 종자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종자임을 적어야 합니다.
1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출원인"란 다음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적고,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미성년자(출원인)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나타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대표자 선임의 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출원인을 "출원인"란의 첫째 난에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증명서류 내용을 적으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대리인이 출원인 전원을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란을 "출원인 ○○○의 대리인"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16.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출원인"으로, "신고서"를 "출원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 시	출원번호	출원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표시	출원국명	출원일
	출원번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1.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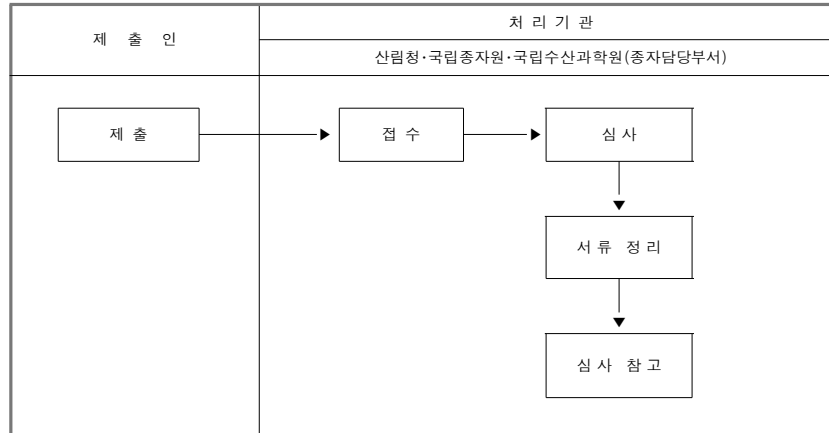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표시”란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일 및 출원번호와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우선권 증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출원국명			
발급 부수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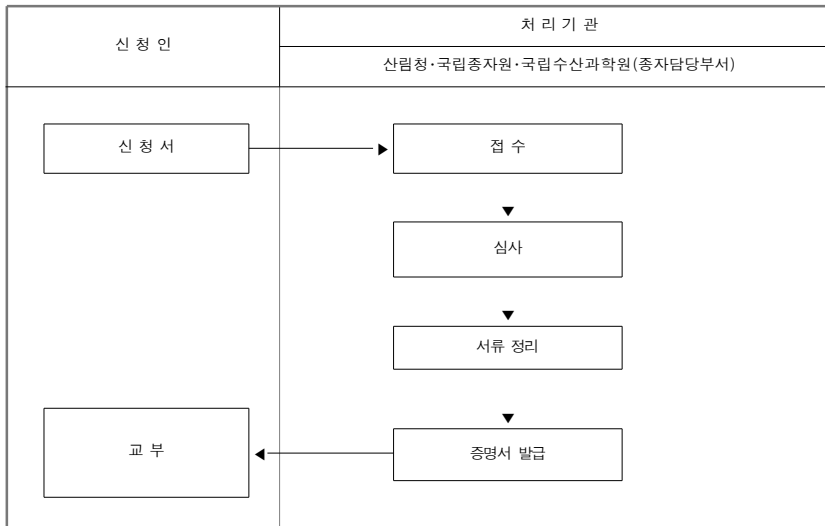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출원국명”란에는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출원국가의 출원국명을 적어야 합니다. 출원국가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 적고 신청 부수를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우선권 증명서

(Certificate of Rights of Priority)

대한민국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대한민국 국립종자원
KOREA SEED & VARIETY SERVICE
대한민국 국립수산과학원

KOREA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별첨 사본은 아래 출원의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following application annexed hereto is true copy from the records according to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출원 번호:
Application number

출원 연월일:
Date of Application

출원인:
Applicant(s)

년 월 일
Year/Month/Date

산림청장
ADMINISTRATOR, THE KOREA FOREST SERVICE
국립종자원장
COMMISSIONER, THE KOREA SEED & VARIETY SERVICE
국립수산과학원장
PRESIDENT, THE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210mm×297mm[백상지 120g/㎡]

심사 연기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심사연기 요청기간

심사연기 요청사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정보 내용		
증거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된 품종 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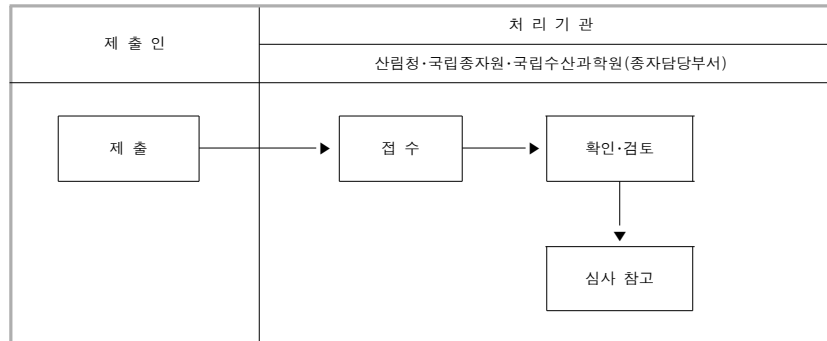
(뒤쪽)

작 성 방 법

1. "정보 내용"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에 따라 출원된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증거방법"란에는 "정보 내용"란에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 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 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품종보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담당 심사관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짜	의견서 제출 마감일		
의견 내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1. 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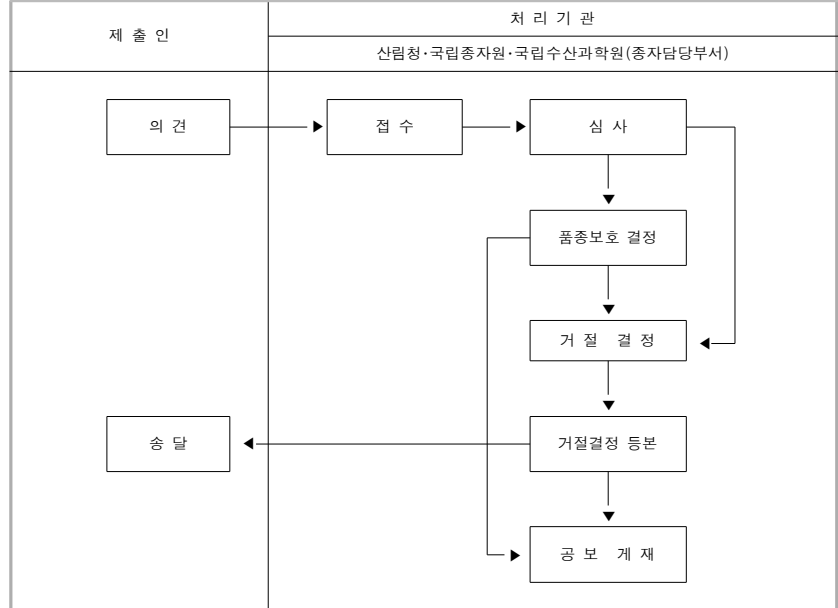
(뒤쪽)

작 성 방 법

1. “제출인”란 및 “품종의 명칭”란은 품종보호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적어야 합니다. 다만, 출원 후에 출원인 및 품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정정된 주소·성명(따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및 품종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2. “의견 내용”란에는 의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의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품종보호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신청서
 [] 품종보호권 회복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품종보호료 미납 사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품종보호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보호품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품종보호권 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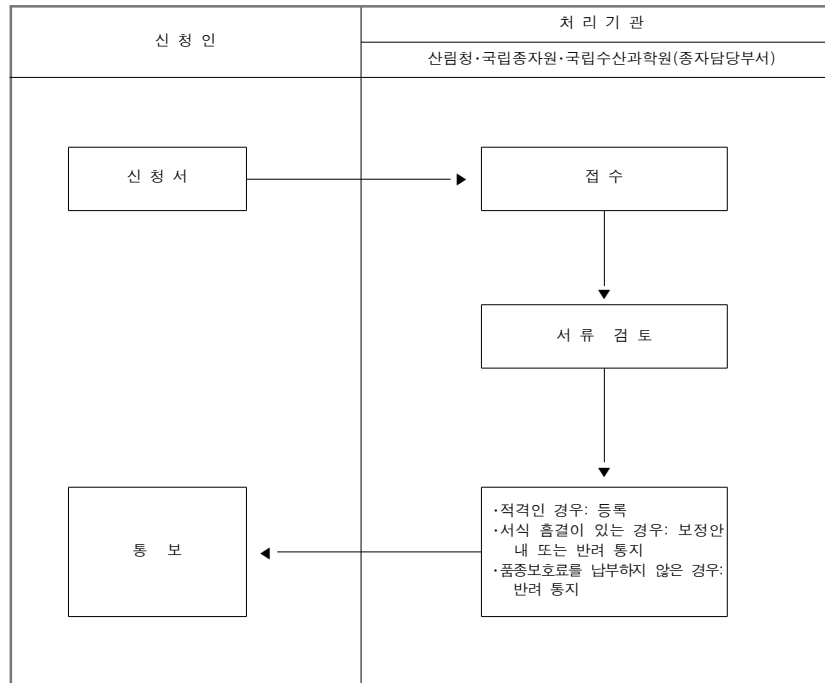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 품종보호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 품종보호권 회복)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등록번호”란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아 적어야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그림 생략: 나라문장 사용)

품종보호권 등록증

CERTIFICATE ON THE GRANT OF PLANT VARIETY RIGHTS

품종보호 제 호 (GRANT NUMBER)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 년 월 일 (GRANT DATE: YY/MM/DD)

작물의 일반명 및 학명: (COMMON NAME & BOTANICAL NAME OF THE PLANT)

품종의 명칭: (DENOMINATION)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PROTECTION PERIOD: DD/MM/YY ~ DD/MM/YY)

품종보호권자: (TITLE HOLDER)

육성자: (BREEDER)

위의 품종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Variety is to certify that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is registered according to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년 월 일 (YEAR/MONTH/DATE)

[그림 생략]

산림청장 ADMINISTRATOR, THE KOREA FOREST SERVICE 국립종자원장 COMMISSIONER, THE KOREA SEED & VARIETY SERVICE 국립수산물과학원장 PRESIDENT, THE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210mm×297mm[백상지 120g/m²]

[별지 제29호서식]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발급 신청서 []재발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Table with 3 columns: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Rows for applicant (신청인), agent (대리인), and case details (사건의 표시).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정정발급/재발급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재발급만 해당함)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물과학원장

Table with 2 columns: 첨부서류, 수수료. Content includes application details and fees (정정발급: 없음, 재발급: 6,500원).

210mm×297mm[백상지 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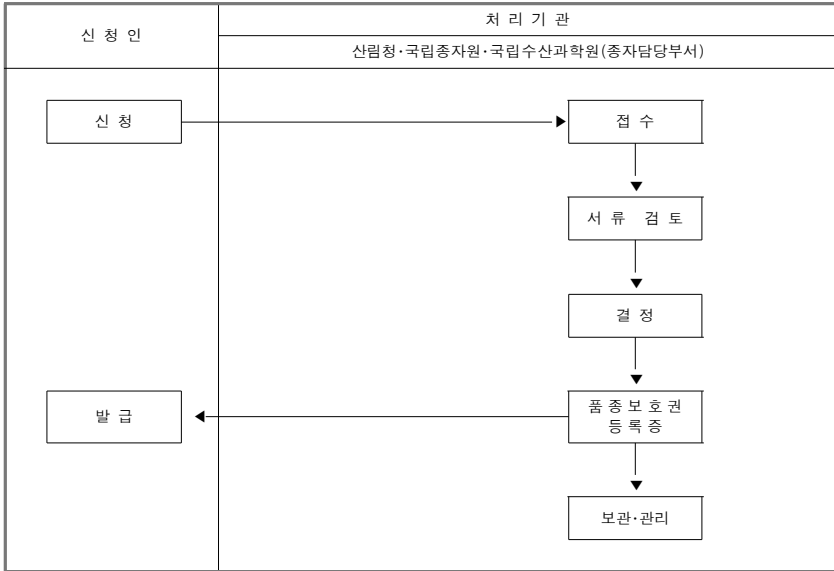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정정발급/재발급 사유"란은 정정발급의 경우에는 정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재발급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은 재발급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품종보호권 상 속
 전용실시권 그 밖의일반승계
 질 권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승계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등록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신고 내용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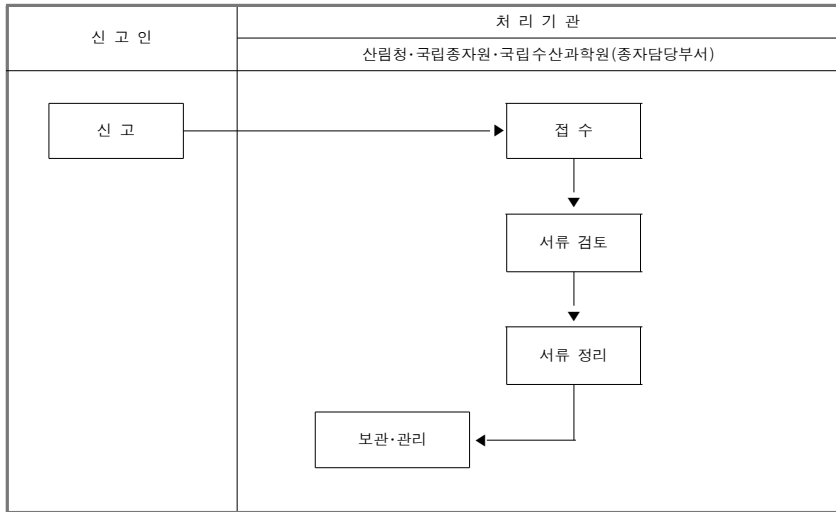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 질권) ([] 상속, [] 그 밖의 일반 승계) 중 해당란에 각각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내용”란에는 신고 종류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뒤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구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등록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청구의 이유		
증거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구인(대리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청구서 부분 1부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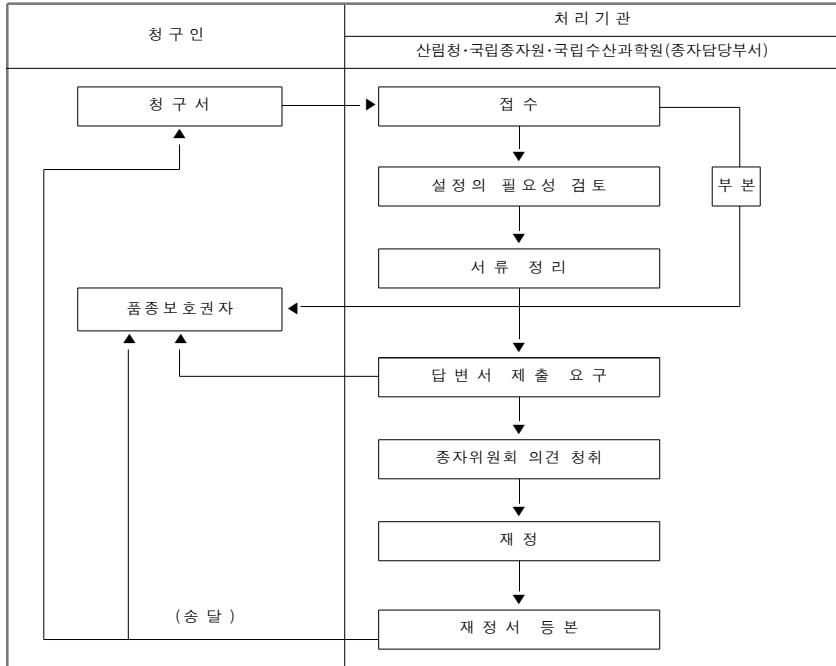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증거방법”란에는 청구의 이유란에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으로, “신고서”를 “청구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통상실시권의 재정 청구에 대한 답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정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등록일	
통지일		답변서 제출 마감일	
답변 내용			
증거방법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물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답변서 부분 1부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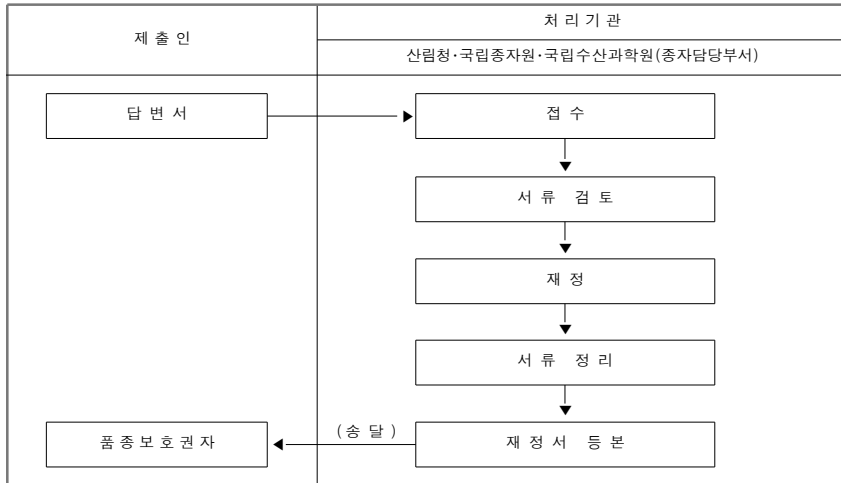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답변 내용”란에는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합니다.
2. “증거방법”란에는 답변 내용란에 적은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답변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답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기간 연장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구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등록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재정기간		
재정의 이유		
연장의 사유		
연장 신청의 기간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 하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첨부서류	1.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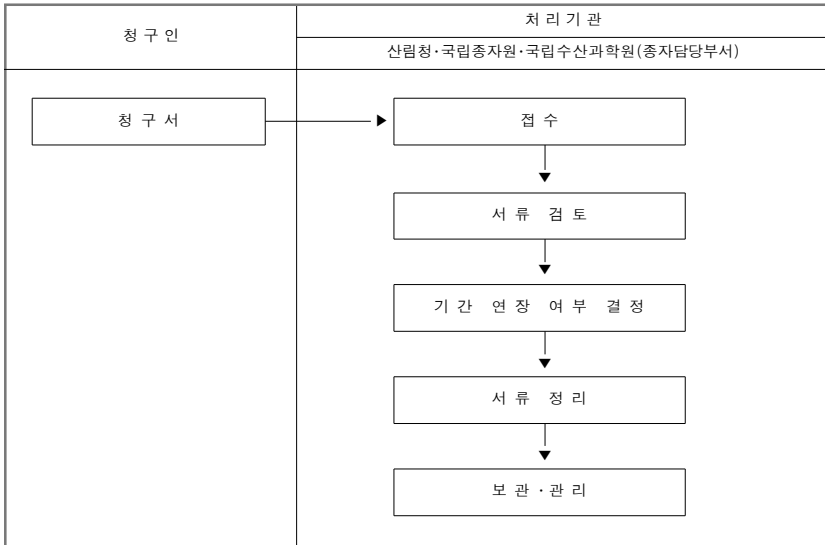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재정의 이유”란에는 재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연장의 사유”란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으로, “신고서”를 “청구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재정 취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취소대상이 되는 재정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등록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재정기간		
재정의 이유		
재정의 취소이유		
증거방법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1. 신청서 부분 1부 2. 재정의 취소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백상지 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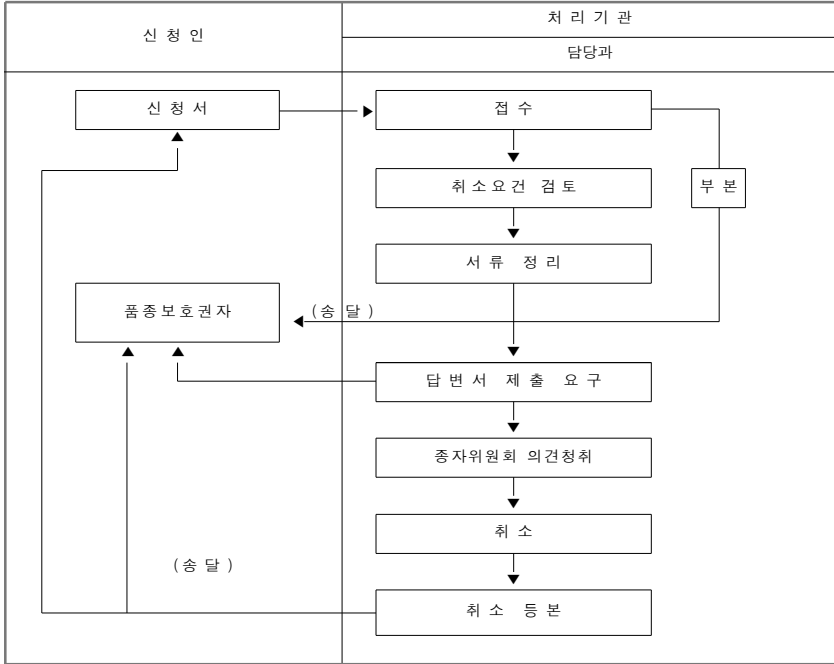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재정의 이유”란에는 재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정의 취소 이유”란에는 재정 취소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증거방법”란에는 취소의 이유란에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정 취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등록일
통지일		답변서 제출 마감일
답변 내용		
증거방법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답변서 부분 1부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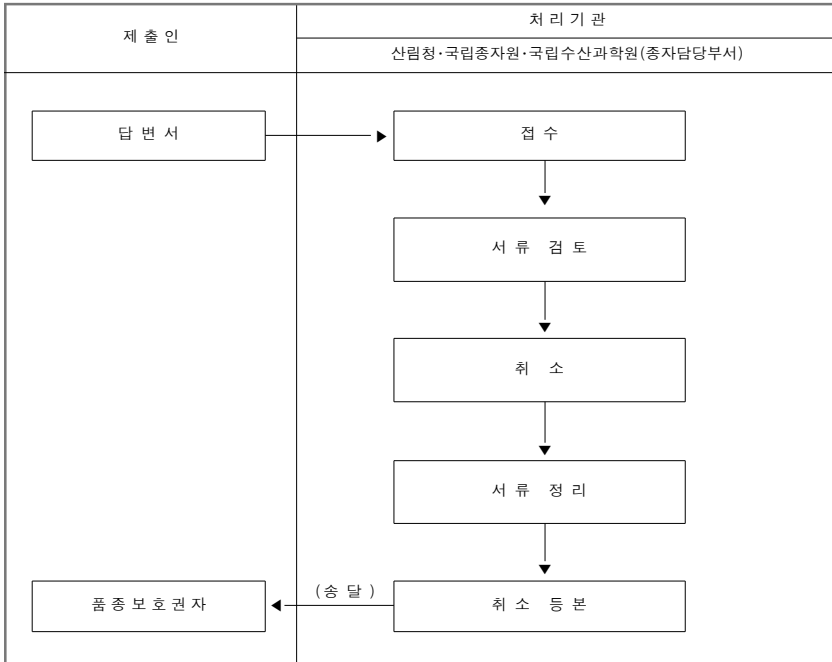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답변 내용”란에는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증거방법”란에는 “답변 내용”란에 적은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답변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답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6호서식]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의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등록일
담당 심사관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취소를 통지 받은 날짜		의견서 제출 마감일
의견 내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첨부서류	1. 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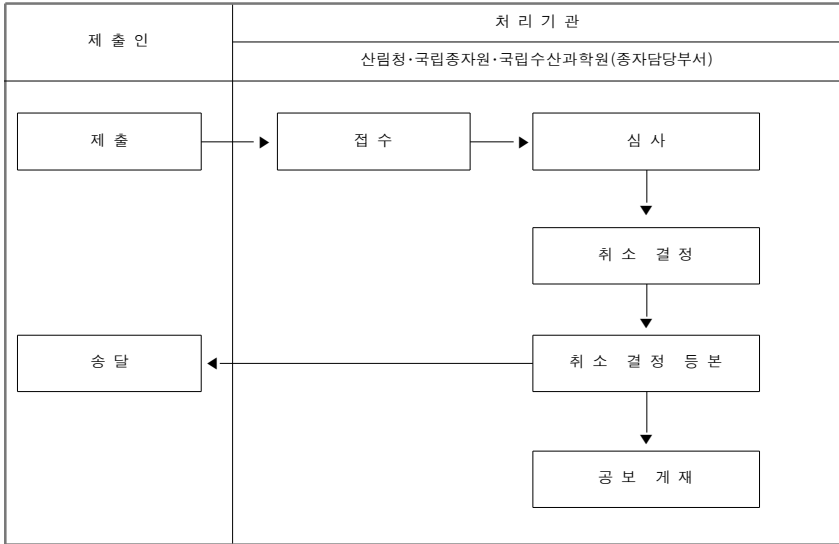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제출인”란 및 “작물의 명칭”란과 “품종의 명칭”란은 품종보호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 후에 출원인 및 품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정정된 주소·성명(따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및 품종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2. “취소를 통지받은 날짜”란 및 “의견서 제출 마감일”란에는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짜 및 의견서 제출 마감일의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의견 내용”란에는 의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의견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의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심 판 청 구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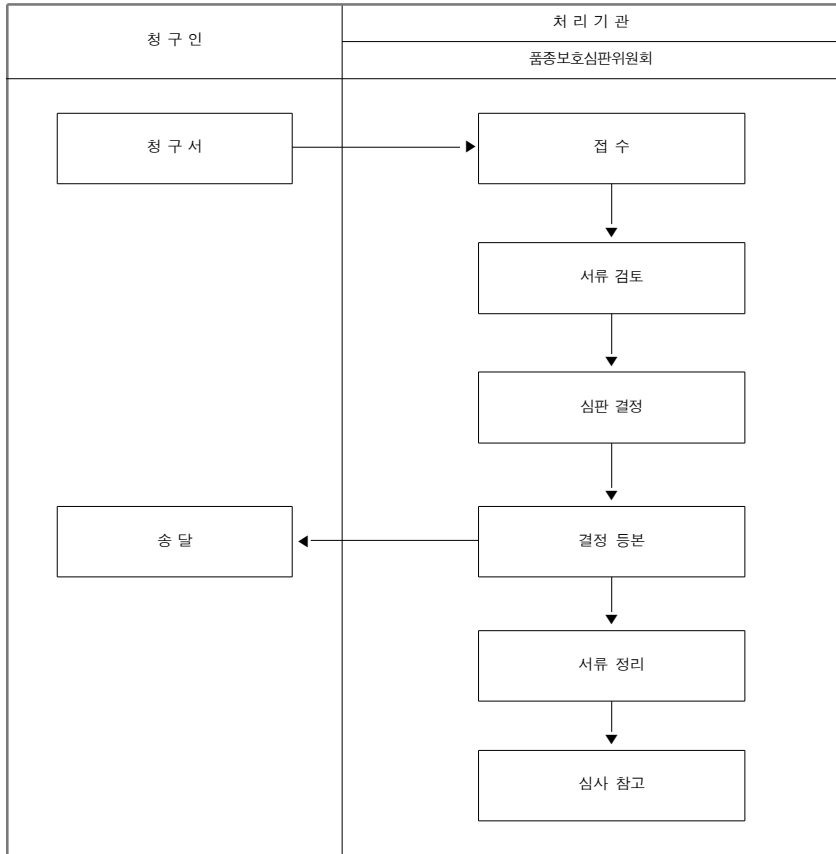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심판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출원일/등록일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심사관의 품종보호결정일· 거절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품종의 명칭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거방법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p>「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1조·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p>		
첨부서류	1. 청구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만원

210mm×297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심판사건 답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피청구인 (답변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심판번호	답변서 제출 마감일	
답변 내용		
증거방법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답변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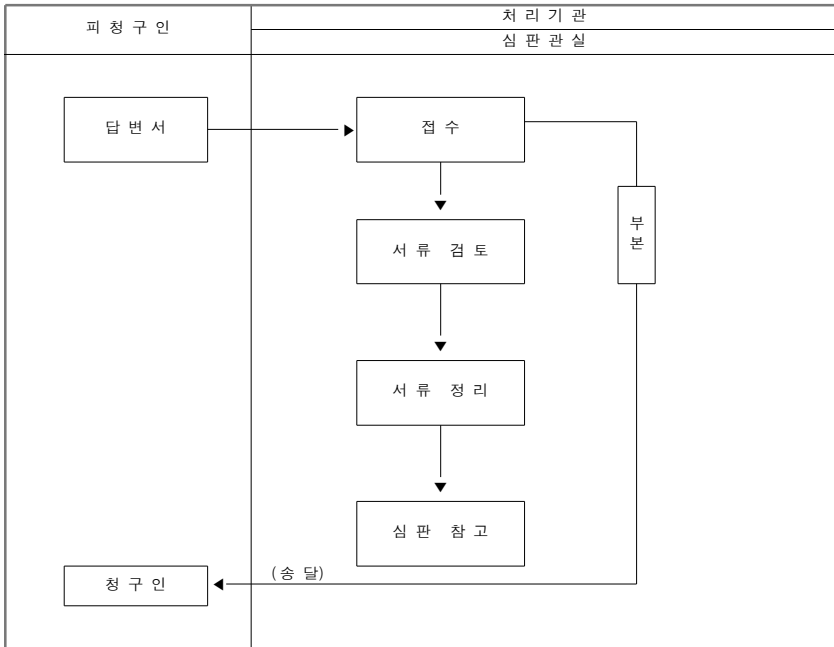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답변서 제출 마감일”란에는 심판위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답변서 제출 마감일을 연월일로 적어야 합니다.
2. “답변 내용”란에는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증거방법”란에는 “답변 내용”란에 내용의 증거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거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증거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신고서”를 “답변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답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심판위원 [] 제척 신청서
[] 기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심판번호

제척 또는 기피 대상 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

증거방법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심판참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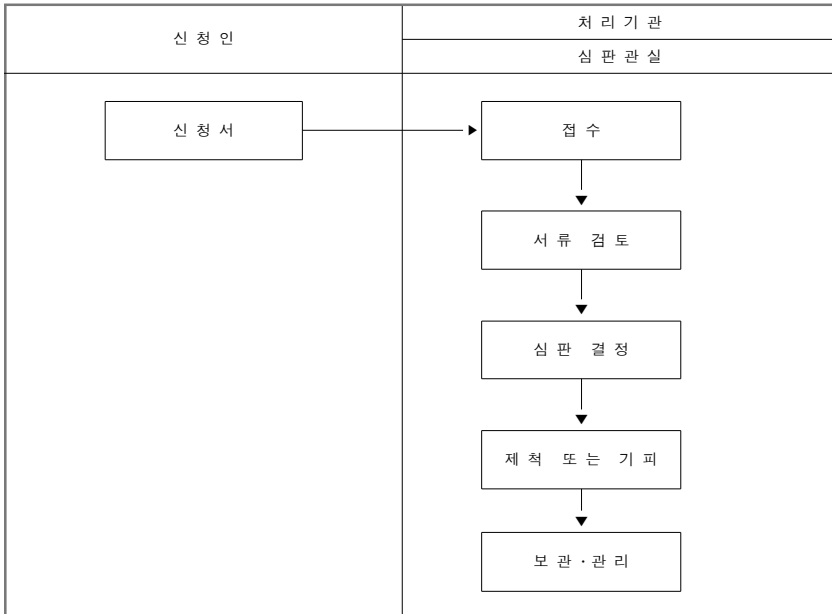
(앞쪽)

작성 방법

1. 서식 제목에서 신청 종류를 나타내는 ([]제척, []기피) 중 해당란에 표시(V)를 하여 신청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란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증거방법"란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란에 내용의 증거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거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심판번호

참가의 이유

참가의 종류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1항 및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심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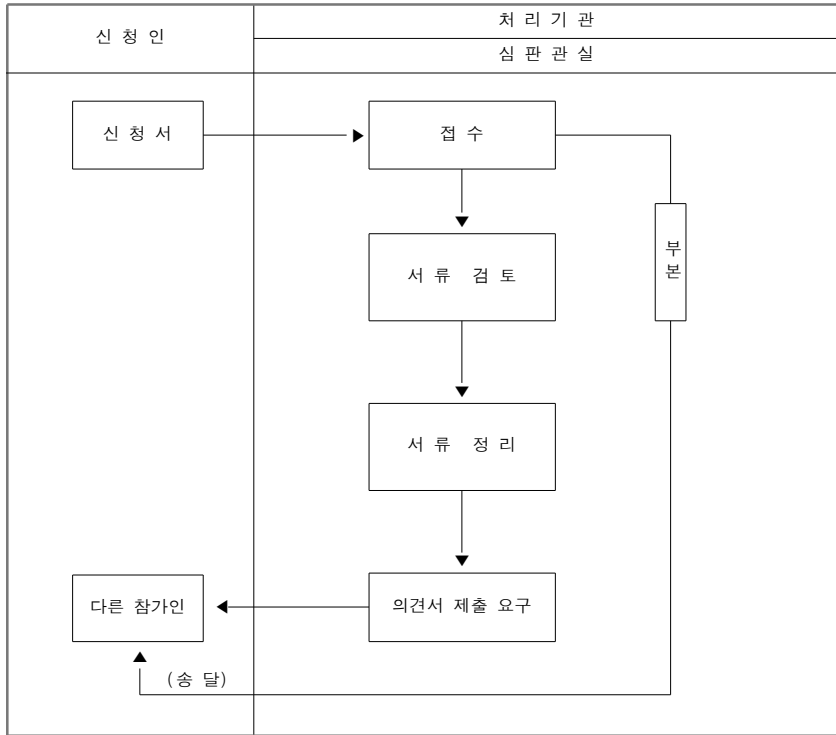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참가의 이유”란에는 참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합니다.
2. “참가의 종류”란에는 참가의 종류(공동심판 참가, 보조 참가)를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1호서식]

[] 심판 참가 신청 의견서
[] 증거조사(증거보전) 결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심판번호		
통지사항	통지일	제출 마감일
의견내용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심판장 귀하

첨부서류	1. 의견서 부분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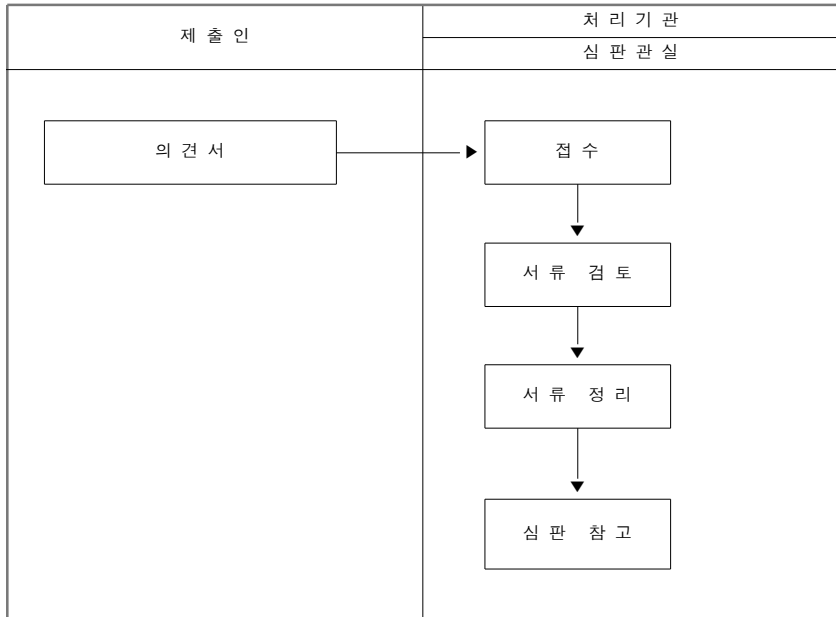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서식 제목에서 의견 종류를 나타내는 ([]심판참가신청, []증거조사(증거보전) 결과) 중 해당란에 표시(V)를 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2. "통지사향"란에는 심판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짜 및 제출 마감일의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의견내용"란에는 의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물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의견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의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2호서식]

증거보전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심판번호		
증거		
증명방법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식물신물질 보호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 및 「식물신물질 보호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심 판 관 장

귀하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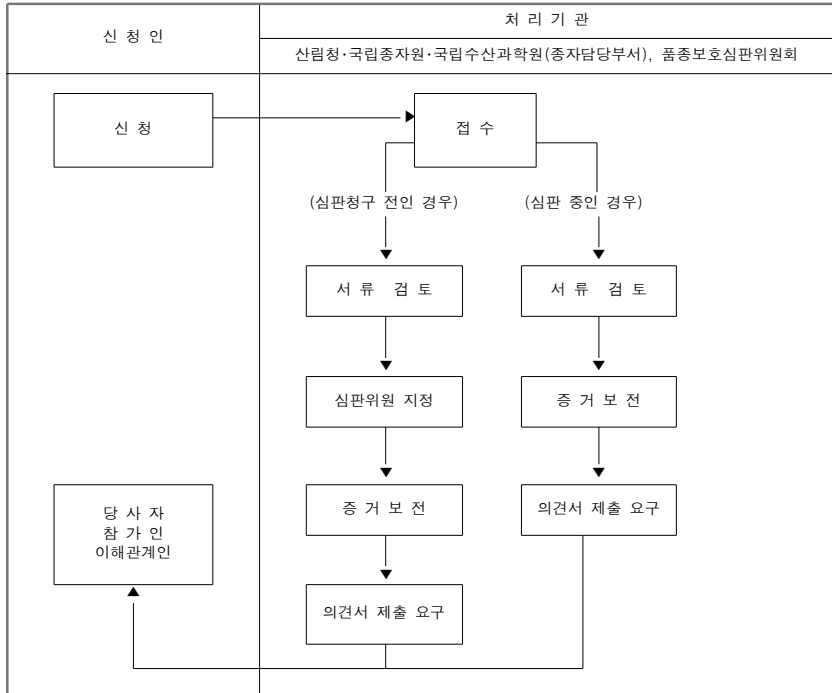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증거”란에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증명방법”란에는 “증거”란에 적힌 증거로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물연구원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3. “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명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며,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3호서식]

심리 재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심판번호		심리 종결 통지일
심리 재개의 취지		
심리 재개의 이유		
증거방법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리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심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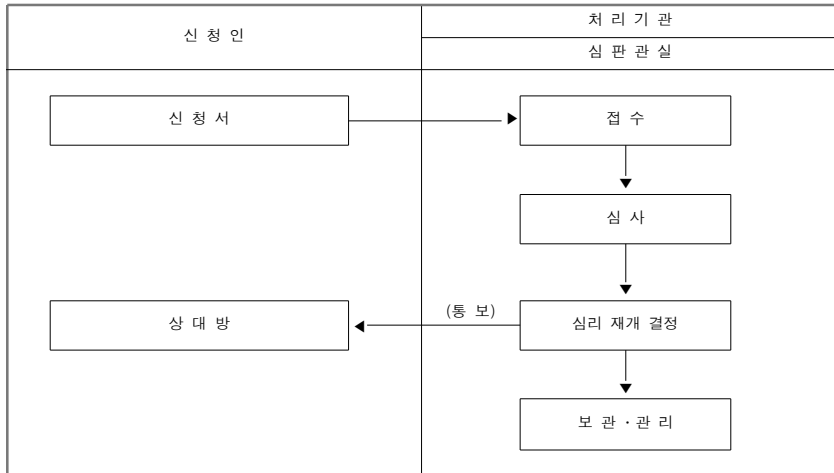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심리재개의 취지"란에는 심리재개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심리재개의 이유"란에는 심리재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증거방법"란에는 "심리재개의 이유"란에 내용의 증거로 심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거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4호서식]

재심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심판번호	심결 또는 결정 송달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거방법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원결 확정일	재심 사유를 안 날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9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청구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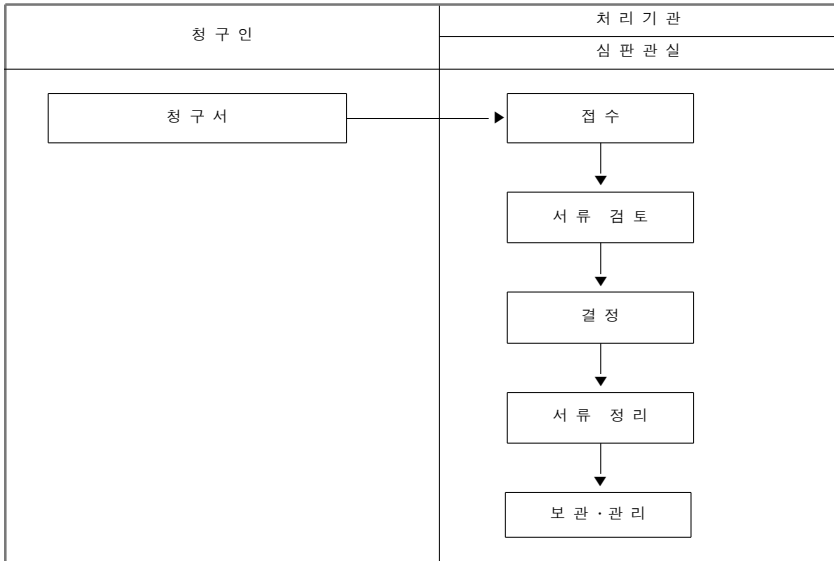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청구의 취지”란에는 청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증거방법”란에는 “청구의 이유”란에 내용의 증거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거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신고서”를 “청구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5호서식]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 시	출원번호 접수번호	출원일 접수일
제출 원인	[] 거절이유 통보 [] 취소사유 통보	
거절이유 또는 취소사유		
통보를 받은 날짜	제출 마감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새로운 품종명칭	(한글)	
	(영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제5항 및 제1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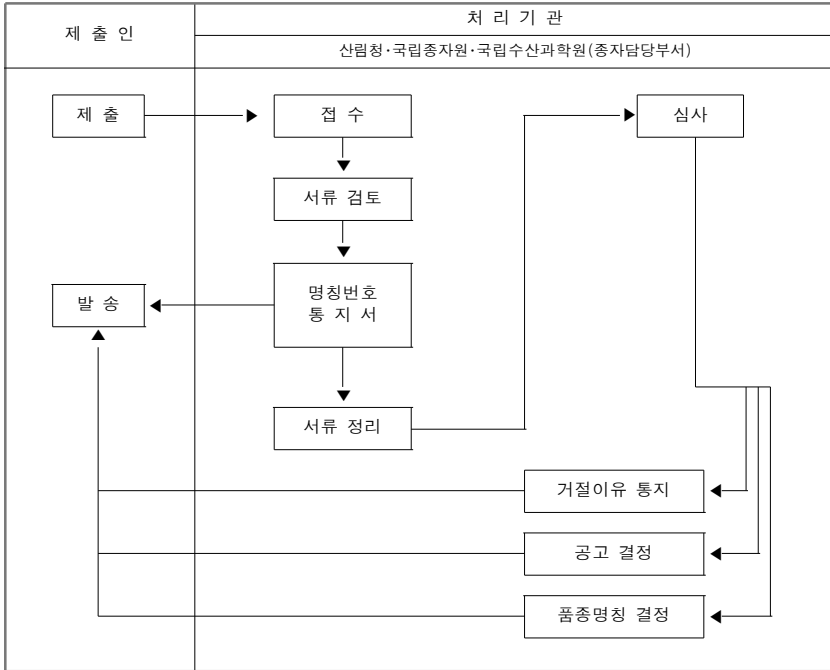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제출 원인”란은 [] 거절이유 통보, [] 취소사유 통보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2. “거절이유 또는 취소사유”란에는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거절이유 또는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품신제품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품종명칭 등록원부

품종명칭 등록번호	제 호		
출원 연월일	년 월 일	출원 번호	
출원 의 원 인	<input type="checkbox"/> 품종보호 <input type="checkbox"/> 국가품종목록 등재 <input type="checkbox"/> 품종 생산·판매		
출원 공고 연월일	년 월 일	출원 공고 번호	
결정 연월일	년 월 일	담당 심사관	
작 물 의 명 칭			
품 종 의 명 칭			
년 월 일 등록			
기 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원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 공고번호	출원일 출원 공고일	

담당 심사관	
신청 이유	
증거	
증거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분 1부 2.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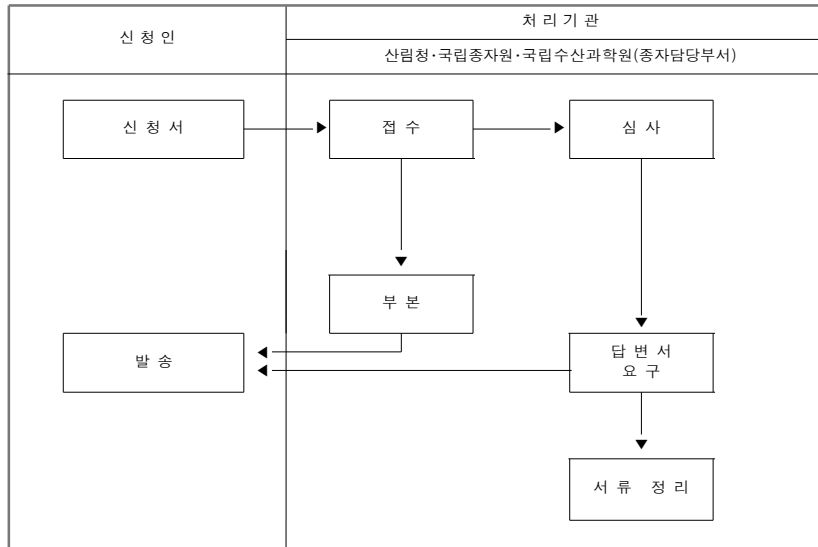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출원인”란은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적어야 합니다.
2. “신청 이유”란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구체적 증거를 들어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증거”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에 의하여 출원된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증거방법”란에는 “증거”란에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통지일		답변서 제출 마감일
담당 심사관		
답변 내용		
증거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1. 답변서 부분 1부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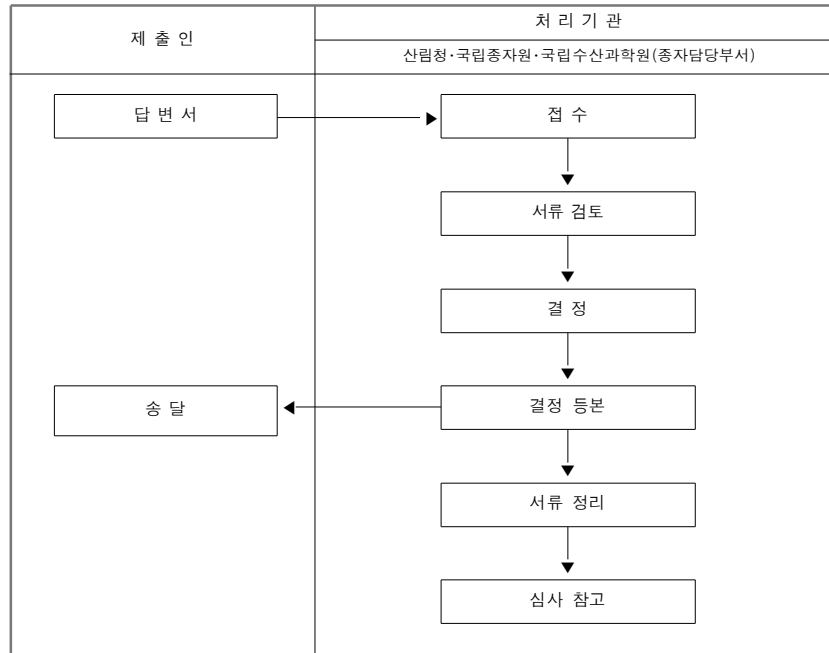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 “이의신청인”란은 송달받은 이의신청서 부분에 적힌 이의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답변 내용”란에는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증거방법”란에는 “답변 내용”란에 적힌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답변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답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9호서식]

조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피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주소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증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 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2. 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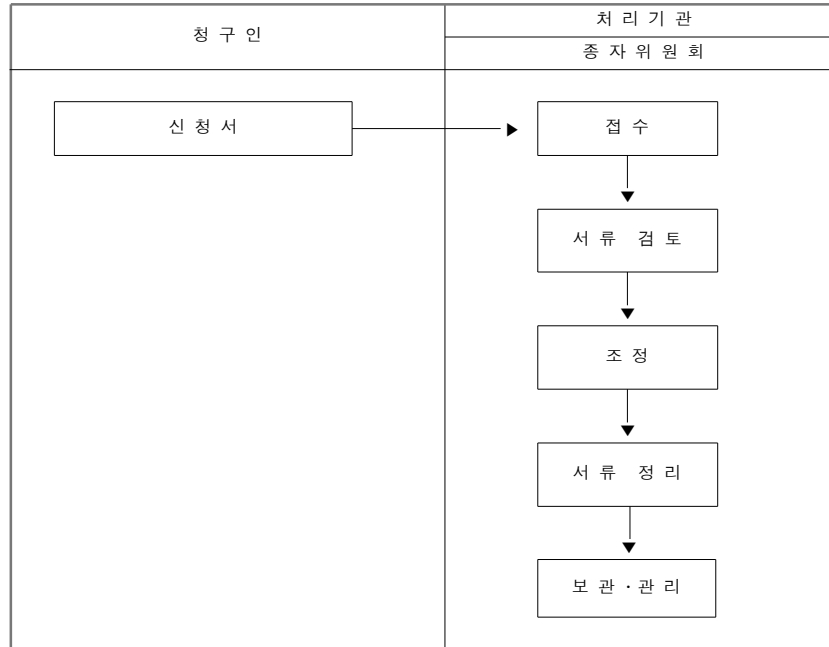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란에는 청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란에는 분쟁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신고서”를 “청구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등본 의 [] 열람
 [] 초본 의 [] 복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또는 심판번호	출원일 또는 심판청구일
	등록번호	등록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신청 내용	신청 부분	신청 부수
	사용 목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물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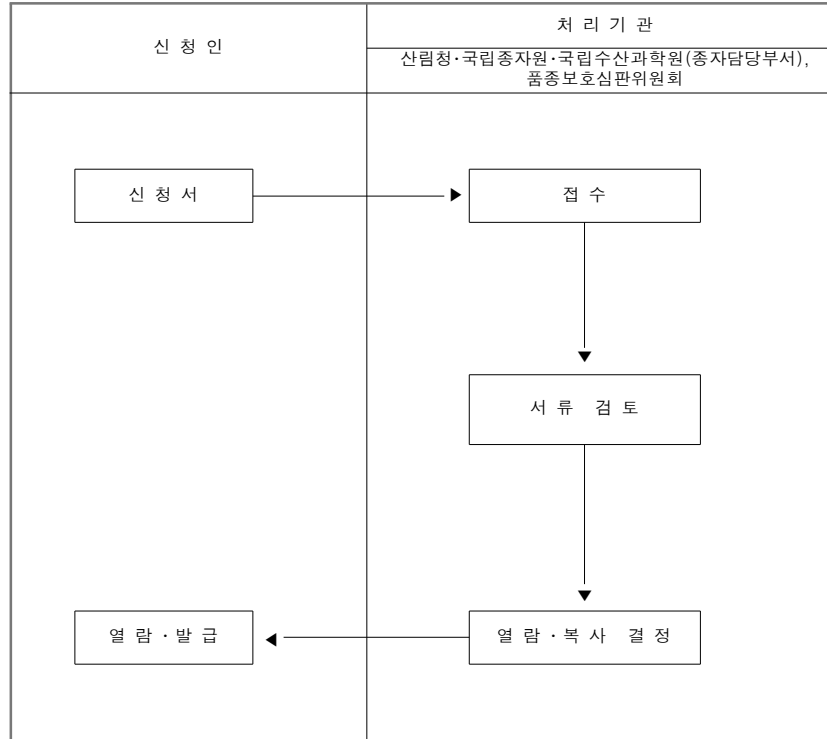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1호서식]

자료 [] 열람
[] 복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복사 구분	복사 쪽수	통 수	총 쪽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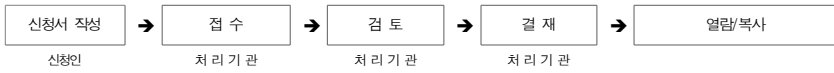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출원 및 등록 관련 서류 사본 1부 복사: 3천원 서류 사본 1면 복사: 2백원
------	--	--

처 리 절 차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13.10.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호, 2013.10.18, 일부개정]

[시행 2013.10.18] [해양수산부령 제43호, 2013.10.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제2조(등록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8>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5.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7.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8.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전문개정 2010.9.10]

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1.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전문개정 2010.9.10]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1.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9.10]

제5조(부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1.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식품신제품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0]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0]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품종보호 원부 <개정 2010.9.10>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① 품종보호 원부는 품종보호 등록원부,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및 품종보호 신탁원부로 한다.

②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0]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전문개정 2010.9.10]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에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보호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확인하여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품종보호권자 및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① 등록관청은 품종보호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10.9.10>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18>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1. 품종보호권의 설정·소멸(포기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및 회복
 2. 법원이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 해당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
 3.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전문개정 2010.9.10]

제15조(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등록관청은 제4조 각 호의 신청·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예고 등록을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6조(등록신청)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판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18조(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등의 등록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의 등록은 재외자 또는 품종보호관리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제20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품신제품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10.9.10]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22조(신청서) 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전부나 그 지분의 전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4.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5. 통상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6. 질권설정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
8.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9. 가등록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10.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11.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
12. 회복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

[전문개정 2010.9.10]

제23조(첨부서류)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 경우
 - 나.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 다.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7.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제3자의 기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①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음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한 신청인은 그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등록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품신제품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10.9.10]

제25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①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계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제28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의 순서)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식품신제품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에 적은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보호품종의 명칭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그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종보호권리인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수리거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1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적힌 변경 전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으로 분다.

[전문개정 2010.9.10]

제32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등록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2절 실시권 설정 등의 등록에 관한 절차 <개정 2010.9.10>

제34조(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①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 ② 통상실시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 ② 전용실시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절 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

제36조(질권의 설정등록신청) ①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계약 또는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가.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나. 법 제77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다.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라.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

4.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8조(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식품신제품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 재판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42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43조(예고등록의 말소)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나.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 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경우 외에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한 경우,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9.10]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신탁과 등록 <개정 2012.9.14>

제1관 신탁의 등록 <개정 2012.9.14>

제45조(신탁등록의 신청) ①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46조(신청절차) ①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위탁자·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의 방법과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 신탁 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내용

② 등록관청은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47조(대위신청절차)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48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이전 또는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0조(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예의 등록촉탁) ①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예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3조(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예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4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의 등록)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8조 또는 제5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품종보호등록원부에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2.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법원이 신탁을 변경한 경우

[전문개정 2012.9.14]

제55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① 제52조, 제53조, 제58조와 제59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6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등록관청은 제52조제2항 또는 제54조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7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5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9.14]

제2관 신탁과 관련된 권리 등록 <신설 2012.9.14>

제58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4]

[종전 제58조는 제64조로 이동 <2012.9.14>]

제59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품종 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만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4]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9.14]

제61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2.9.14]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9.14]

제63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9.14]

제4장 보칙 <개정 2012.9.14>

제64조(준용) 품종보호 원부의 작성방법·기재요령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14]

[제58조에서 이동 <2012.9.14>]

부칙 <제1296호, 199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부칙 <제1370호, 2000.8.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제19호서식중 "농촌진흥청장"을 각각 "산 립 청 장"으로 한다.

산 립 청 장 국립종자관리소장

부칙 <제1529호, 2006.6.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 2007.11.30>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규정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각각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8호, 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 201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 2013.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품종보호 등록원부

품종보호등록		제 호	
권리란			
표시번호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년 월 일	출원번호
	우선권 주장일	년 월 일	주 장 국
	공개 연월일	년 월 일	공개 번호
	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품종의 명칭
	년 월 일 등록		
품종보호료란			
품종보호권자란			
순위번호	사 항		
전용 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사 항		
통상 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사 항		
품종보호관리인란			
순위번호	사 항		

27271-36211비
97.12.23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청구번호		제 호	
재심청구란			
표시번호	표 시		
재심청구인란			
순위번호	사 항		

27271-36311비
97.12.23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① 접수 연월일	② 접수 번호	③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보호료		납 부 자		⑧ 비 고
			④ 연수	⑤ 금액	⑥ 성명	⑦ 주소	

27271-36611비
97.12.23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

① 품종보호 등록번호	② 소멸원인	③ 소멸일	④ 출원일	⑤ 공고일자 기간만료일	⑥ 품종의 명칭 권리자	⑦ 비 고

27271-36711비
97.12.23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0.18>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일부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공유

지분의 약정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기재)

등록의 목적 (품종보호권 전용(통상)실시권, 질권이나 이들의 지분 일부이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 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신청인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제적등본)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1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품종보호권 이전: 5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4천원) 실시권 이전: 3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가족 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출 서 류	수수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공유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품종보호권 이전: 5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4천원) 실시권 이전: 3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0.18>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설정계약

등록의 목적 전용실시권 설정

전용실시권의 범위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기재)

대가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7만2천원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18>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허락

등록의 목적

통상실시권의 범위

(허락서에 정한 경우에만 기재)

대가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4만3천원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허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질권 설정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설정계약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채권액 금 원 존속기간 변제기 이자의 약정 위약금의 약정 특 약 (이 항목은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기재)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 목적	질권의 설정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물학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첨부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질권 설정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7만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0.18>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등록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변경 후의 범위를 적는다) (질권순위의 양도·포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 부 서 류	수수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변경계약서) 2.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3천5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0.18>

품종보호관리인 []선임 []변경 []말소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관리인 또는 품종보호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품종보호권자의 표시 (품종보호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인 또는 품종보호권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 부 서 류	수수료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선임·변경의 경우(예: 위임장) <input type="radio"/> 말소의 경우(예: 해임서 또는 사임서)	○ 선임 또는 변경: 5천500원, ○ 말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0.18>

신탁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수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탁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의 종료의 이유 및 그 밖의 신탁의 조항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포기서, 저작권결정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락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판결서의 등본 등)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 등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3천5백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행정정보공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뒤 쪽)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 1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탁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10.18>

회복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 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신탁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만5천원

첨부서류	수수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품종보호권 등의 회복: 3천500원 신탁등록의 회복: 1만5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시행 2013.10.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호, 2013.10.18, 전부개정]

[시행 2013.10.18] [해양수산부령 제44호, 2013.10.18, 전부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서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 매년 3만원
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매년 7만5천원
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 매년 22만5천원
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 매년 50만원
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 매년 1백만원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①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 등록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2년차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자가 여러 연도분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납부 후 품종보호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물신제품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1.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① 법 제5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육성자와 면제 신청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식물신제품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장애인 증명서

④ 품종보호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면제를 받지 못하고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후에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권리 설정등록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① 법 제51조에 따라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 품종당 5천5백원
2.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 품종당 3만8천원
3.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 가.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 나. 재배심사 : 재배시험 때마다 품종당 50만원
4.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 품종당 1만8천원
5.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신청수수료 : 품종당 10만원
6. 심판청구수수료 : 품종당 10만원

식물신제품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7. 재심청구수수료: 품종당 15만원

8. 보정료(補正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건당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건당 1만3천원

제9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4천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5만3천원

2. 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

가. 전용실시권: 품종당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품종당 4만3천원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7만원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1천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3만3천원

5. 품종보호권·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3천5백원

6. 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5만5천원

7. 가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5천원

식물신제품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0조(그 밖의 수수료) 법 제1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 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쪽에 1백원씩을 가산한다)
2.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 건당 6천5백원
3.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 건당 5백원
4.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 건당 3천원
5. 그 밖의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 1쪽에 2백원

제11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간) ① 수수료(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제외한다)는 신청 등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① 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료"는 "수수료"로, "5년 이내"는 "3년 이내"로 본다.

③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는 "법 제126조제3항 단서"로,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반환할 수수료"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나 품종보호료"로 본다.

부칙 <제48호, 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2조(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가산금을 포함한다)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추가납부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추가납부기간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전명령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품종보호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